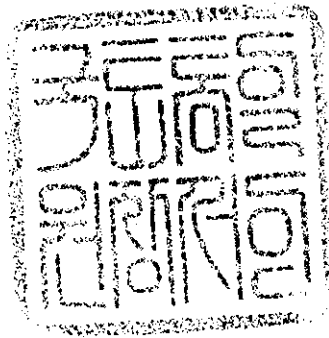


일본의 제 4 차
방위 계획의 동태 분석



1970. 12

목 차

1. 서론	1
2. 전후 일본의 군세력 현황	3
가. 구군벌의 해체	3
나. 제군비와 신군세력의 형성	6
다. 새로운 군대(자위대)	10
라. 새로운 군세력의 성격	11
3. 전후 일본의 재벌	18
가. 전후일본재벌의 해체	18
나. 경제자립과정과 재벌	22
다. 기업집단=콤비나드	30
라. 군수산업과 재벌	32
4. 일본의 국방정책	39
가. 국방정책의 결정과정	39
나. 1차~3차방위계획분석	40
다. 각정당의 정책비교	44
라. 1969년 국방백서	45
5. 제4차방위력정비계획의 전망	52
가. 평화공존전략	54
나. 대일기본전략과 아시아정세	55

다. 극동의 군사정세	57
라. 미국의 입장과 일본의 책임	59
마. 방위의 규모	61
바. 제 4 차방 의 기본	63
사. 제 4 차방 의 예산	66
아. 자주방위와 소요경비	67
자. 기본적 방위구상	69
차. 육상자위대	70
카. 해상자위대	77
타. 항공자위대	83
파. 핵장비, 유사시 력부장의 검토	84
6. 결 론	87
부록 : 1970년 「방위백서」 요약	91

1. 서 론

1969년 11월 21일 일본의 "사도수상"과 미국 닉슨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공동성명이 있는 직후 미국정부고위층은 「오끼나와 반환을 계기로 일본은 중대한 방위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극동에 있어서의 방위책임의 확대를 의미한다」 라고 언명하였다.

「오끼나와」 반환에 따라 일본은 방위환경이 확대되었으며 일본이 세계국제정치무대에 있어서 그 역할과 책임이 중대하여졌다는 사실은 온세계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제2차대전에서 패전한후 연합국(미국)에 의한 평화헌법과 미국의 보호정책하에 육성된 전후의 일본은 국제정치상의 주류로 회하여 금일에 이르렀으나 이제 냉엄한 국제정세하에 자기의 활로를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두말 할것 없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정부의 의도의 저변은 방위면에서 다소 위험과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전선축소로서 기본로선을 관철하겠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결과로서 「오끼나와」 반환의 타협도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론 군사력의 목적은 전쟁억제에 주안이 있으며 광의의 정치력으로서 국책수행을 지원하는 수단인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강력한 핵병기는 그 목적달성에는 유효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없는 병기로 화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재래식병기에 의한 국지전과 공격이 용이하게

야기될 수 있으며 동시에 세계각처에서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가 통상병기(채레식병기)에 의한 국지전 또는 제한전쟁의 억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도 이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자위대를 논함에 있어서 필자는 군대로서 취급하는 것이며 해외국과 비교하는데 있어서도 장비나 군사기술면에 있어서 군대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제3차방위력정비계획은 1967년도에 시작하여 1971년에 걸친 5개년으로서 현시점에 있어서의 자위대업무계획은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4차방위력정비계획은 1972년 ~ 1976년까지이며 3차방위계획이 계속되는 것이며 5개년간이한 장기목표이며 일본의 방위력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방위청의 계획발표이전에 있어서의 그 전망과 경위를 평이하게 소개하고 그동태를 분석하는데 끝인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 일본군세력의 현황과 재벌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어 일본의 국방정책면과 1969년의 국방백서 나아가서는 제4차방위계획의 전망과 일본의 국방에 있어서의 새로운 단계들 설명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동시에 1970년 국방백서를 그요지만을 소개한다.

2. 전후일본의 군세력 현황

전후에 있어서의 일본구군벌의 해체와 1950년을 기점으로 새로 대두한 신군세력 ~ 자위대포함 ~ 의 동태에 관한 분석 특히 구군벌내의 구군인과 새로운군과의 관계상황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 구군벌의 해체

일본의 구군벌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전전에는 일본군국주의의 주도세력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제2차대전의 종료와 함께 일본점령정책의 첫과제는 구군벌의 해체와 일본의 비군사화였다. 물론 그와 같은 내용의 점령작업은 미국만이 아닌 연합국의 공동적인 정책표현이며 결정이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1) 구군벌의 해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미국의 대일본점령정책의 초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일본점령목적물 두가지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의 민주화요 다른 하나는 일본의 비군사화라는 두가지 기본목적하에 점령정책의 근간이 되어 일본에서는 구군대의 해산과 함께 구군벌도 자연히 해체된 것이다.

(2) 일본의 비군사화. 그것은 점령이 시작된 직후인 9월2일 GHQ의 지령제1호 익일의 지령제2호에 따라 급속도로 진행되었는데 그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내지의 육·해군 군인의 전원 복원

◎ 일본내지부대의 무장해제 및 복원, 본국송환

- ◎ 재외부대의 항복, 무장해제 및 복원, 본국송환
- ◎ 병역법, 국가보안법 군사보호법, 군단자원 비밀보호법, 요새지대법, 육해군 형법 등 군사법령의 폐지
- ◎ 군사품생산의 금지
- ◎ 민간무기의 금지
- ◎ 대본영, 참모본부사령부, 교육총감부, 육해군성 등 군사기관의 폐지
- ◎ 전시 행정기구, 전시입법, 전시 또는 군사적단체등의 폐지 또는 해산
- ◎ 군인의 공적추방, 전범용의자의 체포, 재판, 처형등 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비군사화조치 구군벌의 모-든 활동근거를 완전히 배제시킨 조치라 할 수 있다.

(3) 이외에도 비군사화틀 통한 구군벌의 배제, 해체에 관련된 지령이나 각서가 점령초기에 많이 있었으며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권한에 관한 맥원수의 통달 (1945. 9.6)
- ◎ 항복후의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 (1945.9.22)
- ◎ 정치경찰폐지에 관한 각서 (45.10.4)
- ◎ 일본점령 및 실현을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에 있어서의 초기기본지령 (45.11.1)

◎ 연합국의 일본질령의 기본적인목적과 연합국에 의한 그달성

방법에 관한 맥원수의 관하부대에 대한 훈령(45.12.9)

◎ 군국주의적인들의 공직파면, 배제에 관한 각서(46.1.4)

◎ 정당기타 계단체 폐지에 관한 각서(46.1.4)

◎ 항복후의 대일기본정책(47.6.19)

(4) 구군벌의 해체와 관련있는 사실의 하나는 전쟁범죄재판으로 인한 구군벌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었다.

(5) 또한 미국은 포스담선언, 미국의 초기대일방침, 항복후의 대일기본정책(1947.6.19)에 따라 G.H.Q는 공직추방에 대한 지령을 수차요구하였다. 특히 1946년 1월 4일의 「군국주의적인들의 공직으로 부터의 제거 및 배제」라는 G.H.Q의 각서, 동년 2월 28일의 포스담칙령, 1947년 1월 4일의 「공직에 관한 취업금지 퇴직등에 관한 칙령」 등에 의거 동년 7월 2일 해당자의 가지정이 실시되고 익년 3월에 완료되었는데 그수는 204,304명이었으나 그중 해당자는 193,142명으로서 결국 1946년 이래 1947년 5월까지 총계 203,660명의 추방이 있었다.

(6) 군벌의 해체 또는 재기저지를 위한 중대한 조치는 전후 일본의 신헌법제 9조 조항과도 관련된다. 제 9조는 전쟁포기조항으로서 이조항설정에는 크게 미국이 작용한것만은 다음의 문서나 기본사실로서 짐작할 수 있다.

◎ 1945. 8. 29 미국의 대일정책에서의 군국주의배제의 기본계획

- ◎ 1945. 10. 17 번즈국무장관이 맥원수의 정치고문인 애치슨에게 보낸 서간
- ◎ 1946. 1. 7 국무·육·해군성간 조정위원회(S.W.N.C.C)에 의해서 채택된 「일본정치기구개혁」에서의 「군부의 권한 또는 세력의 소멸.....」이라는 내용
- ◎ 1945. 10 재군비조항을 시사, 지지한 「근위분마」와의 교섭중단
- ◎ 1946. 1.24 백원수와 폐원수상과의 회의(2시간)에서의 제9조의 「아이디어」가 나와 (1951. 5. 18) 결정적으로 전쟁과 군대 및 전력을 금하는 헌법을 채용하게 되었다.
- ◎ 그후 헌법제정의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1946.3.6 폐원내각은 2.B.G.H.Q의 제헌초안에 약간가필하여 국회에서 크게 토론된후 1946년 10월 7일 중의원을, 10월 29일에 참의원을 통과하여 11월 3일에 공포하였다. 이상과 같은 헌법제9조를 위한 일련의 제정목적 절차과정 및 그 효력은 과거의 군벌의 해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군벌의 대두와 발전을 금지하는 기중한 장치가 되었다.

나. 재군비와 신군세력의 형성

전술한바와 같이 일본의 폐전은 곧 구군벌의 해체를 가져왔는데 그주된 요인은 미국의 초기점령정책중 일본의 비군사화라는 기본 목적에 의한 제반조치였고 그것을 더욱 보증한것이 신헌법의 전쟁및

군력보유의 금지조항들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군벌의 해체로 인한 일본의 비군사화정책도 1948년 이후의 미국점령정책변화와 1950년 한국동란을 계기로 하여 일대수정을 가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점령정책의 변환에 따른 일본의 군비였다. 이와 같은 재군비를 위요한 문제는 특히 구군벌 또는 구군인의 분제와 관련된 새로운 군세력의 형성이다.

(1) 먼저 일본의 재군비과정을 검토하려면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의 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령정책에 관계되는 기본사항은 다음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 「로얄」 미육군장관연설 (1948. 1. 6)

◎ 매일이사회 소련대표의 맥원수에 대한 서간 (48.11.12)

◎ 맥원수의 년두사 (1949. 1. 1)

◎ 국동위, A급전범재판총료법령 (49.3.14)

◎ “맥”원수헌법제3주년기념연설 (50. 5. 3)

(2) 그런데 이와같은 일련의 점령정책변경의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

(가) 10,000명에 달하는 최초의 추방해제가 있게 되었고 (50. 10. 13)

(나) 구군인 3,250명의 추방해제가 있었는데 (50.10.30) 이들 대부분은 소위 태평양전쟁개시후에 육군사관학교, 육군경리학교, 해군병학교, 해군경리학교에 입교한 직업군인이었다.

이와 같은 점령정책의 변화와 추방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실질적인 재군비를 위한 조치이며 기초작업이었다.

(3) 경찰예비대의 창설은 바로 일본의 재군비를 위한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이 경찰예비대의 창설은 한국동란을 위요한 극동의 안보와 당시 일본수단의 마군 4개사단의 한국출병으로 인한 일본치안의 대책에서 그인유를 찾을수 있는데 맥원수의 1950년 년두사에서 (헌법은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는 원칙은 미국의 공적인 입장의 표명이라고 보겠다.

맥원수는 동년 7월 8일 「일본경찰력의 증설에 관한 서간」 에서 요시다수상에게 「일본정부에 대하여 75,000명의 국가경찰예비대의 창설과 해상보안청정원 8,000명의 증강을 위한 필요조치를 허가한다」 라고 함으로서 사실상의 재군비를 강력하게 지시하였다.

(4) 그 후 1950년 7월 14일의 지령에 의해서 경찰예비대의 편제, 장비 훈련 및 통제에 관하여 일본정부를 원조지도하기 위하여 군사고문기관을 민사국의 이름아래 설정하였는데 그지령에서 제2국(정보) 제3국(작전) 공공안전부 등의 지도책임을 부여하였다.

(5) 경찰예비대는 그후 GHQ와의 경찰예비대에 관한 대강안(50.7.17) 과 1개월후인 8월 10일 일본정부공포의 「경찰예비대령」 에 의해서 발족하였다.

동령에 의하면 경찰예비대의 목적은 「일본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복지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 국가지방경

찰 및 자치체경찰력을 보완키 위하여]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관하여서는 「경찰의 임무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며 적어도 일본국헌법에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간섭하는 등의 기능을 난용해서는 않된다」 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서 볼때 경찰예비대의 성격은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폭력이나 한계를 넘은 정치적시위에 대비한 치안경찰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예비대의 구상을 백원수는 분명히 의장군대 4개사단의 편성이었고 또 한 그조직과정자체가 극비밀리에 GHQ에서 이루어졌음을 볼때 단순한 치안경찰아닌 군대조직의 기초조직이라 한것이다.

(6) 경찰예비대의 발족과 함께 구군인 또는 구군벌의 적극적인 동향과 경찰예비대가 시작할때 그모집에서 피추방자나 구직원군인은 제외될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구군인지도자는 연합국의 국제협정에 의하여 추방되고 있고 연합국최고사령관이 공포한 방침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구군국주의자 또는 그지지자는 예비대에 피추방자의 입대를 찬성하고 있으나 당시의 일본국민다수는 전쟁을 혐오하며 재군비를 반대하고 예비대속에 구군인을 넣는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되었다. 일본정부는 구군인의 편입에 대하여 여러가지 반증을 보고난 뒤 결정키로 하였다.

(7) 그렇다면 점령기간동안에 구군인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또 그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여 왔던가 태평양전쟁이 종결하였을때 맥사령부의 제2 국은 일본군사기구의 해체와 복원에 관한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었다. 제2 국장인 월로비소장은 오랫동안 일본군대와 싸웠기 때문에 해임된 구군인의 군사능력을 높히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구군인을 감시하는것 같이하면서 일본복원국을 조직하였다. 그의 표면적인 목적은 일본군대의 해체와 복원이 있으며 구일본 육·해군장교의 전명부를 보존하고 극동사령부를 보좌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군의 복원이 완료되었기만 월로비소장은 계속 복원국의 활동을 가능케 했으며 따라서 일본군대를 재건키 위한 기관같은 느낌이 있었다.

복원국은 전쟁범죄자가 처형되고 난뒤 기존의 구육해군의 장관좌관급의 장교중 가장 유능한 자들을 선택하여 집무케 하였다. 구군장교인 이들의 보고는 때로는 미국최고위당국까지 올라갔다. 따라서 전후군국주의는 추방되었으나 복원국은 월로비소장의 밀정으로서 점령군의 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극히 주목할 일이다.

다. 새로운 군대 (자위대)

(1) 자위대의 임무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탄생한 것은 한국동란발생후 2개월후인 1950년 8월이었고 2년후인 1952년 8월에는 보안청으로 개조되고 이어 육상보안대, 해상경비대로 되었으며 3년후인 54년

2월에는 방위청으로 개조된 육·해·공의 3자위대가 발족되었다. 이와같이 발족된 자위대의 임무는 “방위청설치법(54.6.9 공포)에 있어서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것」(동법4조) 자위대법(54.6.9 공포)에서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침략 및 간접침략에 대하여 일본을 방위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공의 질서유지에 임한다」(제3조)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위대의 임무는

- ◎ 국토방위를 주임무로 하고
- ◎ 필요에 따라 치안의 유지에 임하며

그 전신인 경비대·보안대가 치안유지를 주임무로 했을 때와는 달리 방위라는 군대의 성격이 명확화하게 되었다.

(2) 자위대의 행동

총리대신의 명령으로 행동하고 있다. 행동의 대체적인 것은

- ◎ 방위출동(자위대법76조)
- ◎ 치안출동(동78.81조)
- ◎ 각종행사에서의 협력
- ◎ 기타부의협력

해상관측

인공강우시험협력 기타

라. 새로운 군세력의 성격

제2차대전 이전의 일본군 별이 종전후에 일부는 전범자로 처단

되고 일부는 새로운 군세력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1950년 한국전쟁당시에 미국이 일본에 군정을 실시하면서 제1차로 일본에 예비경찰대를 설치하고 다시 이를 보안대로 재편성하고 그후 자위대로 편성했다. 이와 같은 군편성의 과정에서 첫째로 우익인파 신설된 방위대학출신인 새로운 간부들이 동시에 미국식군대 교육과 받는 가운데 그들의 사고방식 즉 구군대와 새로운 간부들 사이엔 의견대립이라는 점은 무엇인가? 둘째로 자위대가 10여년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전력없는 군대가 전력있는 군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 및 정계에서 여야간의 헌법제9조해석에 따른 문제와 관련지어 다루어야 될것이다.

세째로 미·일 안보조약체결과 세계정세에 따른 아시아정세에 대비할 여러가지 문제들 검토하고 그중 전전군벌이 전후 20년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떤형태로 남아있는가?

이여 반대해가는 새로운 일본군세력의 전망을 아울러 밝히는데 있다. 일본국민으로서의 재군비가 필요하다는 충도 있지만 반대론측은 재군비란것은 전쟁과 직접 관계된것이라고 보며 특히 제2차대전시의 106,000명이 원폭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일본국민은 재군비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들은 재군비란것은 불행불자초하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적인 여론하에서 1950년 6.25 동란적후 일본에 있어서의 미국정책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감시하던 것을 바꾸어 공산주의자에게로 돌리게되었다.

군국주의자를 공직으로 부터 추방하든 것을 중지하고 전전·육·해
공군장교를 1951년에는 대량 추방해제하였다.

1952년에는 약 5,000명정도만 그대로 두고 그이외는 전부해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구군국장교의 대부분은 군국주의교육이외의
민주적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었다. 전전 고급장교 대부분은 전쟁범
죄자로서 재판에 회부되었고 122,235명이 공직에서 추방됐다.

결과적으로 구군인의 엘리트들은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 1951년
~1952년사이 예비경찰대에 입대가 허락되었던 구군인들도 전적으로
환영된것은 아니고 대위·소령·중령·대령의 차례로 입선하였다. 그러
나 일본국민은 그들을 경계했던 것이다. 예비경찰대에 입대하는 것을
반대한 구군인장교는 노취한 편이나 다수는 우익단체를 만들고 미국
에 대한 비판과 젊은 예비경찰대에 대하여도 좋지않게 여겼다.

구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에 단체를 조직하여 혹은 육사동기생,
해사동기생들이 사교, 정보교환, 공제, 공조등 목적을 갖고 구군인끼리
조직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후일에는 대다수가 재군비정책에
동조하여 예비경찰대에 편입되었다. 전전의 군벌이 전후에도 그 계열
을 통한 파벌을 이룬 그대로 계속되었다. 육군과 해군 전전의 고급
장교와 소장 장교사이에 국가와 장래문제를 두고 의견대립을 노정시
키기도 하였다.

구군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이나 그들도 전
후미국과 소련에서 각각 상이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일본은 공산
주의의 직접적인 위협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의

세계정세하에서 미국은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하는 길은 일본의 재군비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일본구군인들은 이에 호응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재무장시켜 한국에서 공산주의와 대결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구군인들의 생각은 외국으로 부터 독립한 일본독자의 군인이 되어 임시로 미국의 무기를 갖고 장비화하면서 한편 일본군수산업을 속히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예비경찰대 창설당시 1950년 6월 동경도 마포의 의무성에 전전 하촌정대장 진기영일중장 반촌중장 궁기주일소장 산본무일랑중장 등 구군인이 모여 미국이 예비경찰대를 「새로운 국군」이라 선계한다면 구군인을 예비경찰대에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던것이다. 이것이 시발이 되어 9월에는 예비경찰간부시험을 거쳐 12월에 대량으로 입대하게 되었고 소장까지 공직추방해제를 시킨다음에 다시 미·일 강화조약으로 말미암아 전부해제되었다. 전전 복부탁사 당대좌와 전전 십정신대좌의 양파가 구군인으로서 일본국내의 자기들이 조직한 단체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구군인들의 사고의 변화와 새로운 간부들의 서구식교육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본군세력의 성격이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방위대학간부양성에 있어서 서구민주주의교육으로 부터 차츰 새로운 민주적군인으로 발전 확립하게 되었다.

비록 군국주의군대는 달리 민주군대라고 자부하는 자위대이기는 하나 그러나 자위대를 둘러싸고 일본정계의 반향은 자못 심각한바

있다. 자위대를 조직한 정치적 근거는 1952년 4월에 발효한 미·일과의 평화조약 또는 미·일간의 안보조약에 있다. 이조약은 일본의 국권회복에 수반한 국토방위의 기본방침에 따른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지금에 와서는 국내외정세와 특히 극동정세의 여러 가지 변화를 고려해야만 되었고 단 미국의 대아정책의 변화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자위대의 성격도 이에 따라 순응하게 되었다. 그러던 70년도의 세계정세는 전반적으로 평화가 보장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것이나가 문제이다. 특히 극동 및 동남아시아지역은 돌아양대진영의 교차지역으로서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양단된 나라 영토문제 종교문제 민족문제 등으로 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실제 부분적으로는 실전상태에 놓여 있음으로 심각하게 문제삼지 않을수 없게 된다. 항상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북괴와 중공이 적극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이상 일본으로서는 안일한 상태로 있을수 없는 위치에 처하고 있다. 더욱 월남전의 종결로서 귀추가 주목되게 되었다.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전략면이나 병력면에서 볼때 자유진영으로서는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아시아만을 따로 볼때 중공이 단연 우세할 뿐만 아니라 위협의 대상이 되지않을수 없게 되어 있다. 인력면에서 7억 8천의 인구라는 거대한 수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며 150개사단을 가진 무시못할 군사력을 가진것이라 중공이 미국과 소련에 비교하면 “핵”으로서는 약한 편이나 아시

아의 주변국가에서는 커다란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극동에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이 또한 17개사단이며 동해에서는 일본해상자위대의 연습을 항상 감시하고 소련기가 일본영공을 침범하면서 항공자위대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일본으로서 볼때에 한국에서 북괴의 무장간첩의 남파 미국 의 푸에부르호 납치등의 긴장상태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음이 판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있어 일본자체의 방위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의 주변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침략가능성 여부는 고사하고 일본보다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때문에 일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주방위력을 보유하여야 할 중대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전후 20년이지난 급일 다방면으로 발전하여 국내적인 산업발전으로보나 국제적인 지위향상으로 보나 군사면에서의 균형된 발전도 가해야 되겠다는 이론도 나올수 있다. 패전일본으로서의 국방의 기본방침에 있어서 국방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첫째이고 외국의 강제적인 위협으로 부터 간섭을 배제하여 독립을 지키는 것이 그 둘째이며 따라서 중요성과 타당성이 있게 된다.

일본방위력의 필요성은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반드시 일치되지 않을때 즉 외교적한계에서 벗어나는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대책도 필요한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본의 현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도오내각이 미국의

대아정책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재무장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상 일군의 신·구 세대간의 차이점 일군창설 및 재무장에 대한 일본인 자신의 비판, 그리고 세계정세속에서의 일군의 잠재적기능 특히 아시아의 긴장속에서의 일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비인도적 행위와 침략자로 낙인 찍힌 일제구군이 아시아의 새정세의 힘입어 재군비를 강화한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나, 한편 그들 자신의 민주적변모와 자유주의에의 기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면서 일군의 성격을 진단한다면 과거 20년간 일군이 끼친 영향은 차츰 새로운 세대의 민주적군인의 세대로 이행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자유진영의 뚜렷한 우방으로서 일군의 역할은 주목된다. 제2차대전외 전범적 기억을 비추어 보아 일군의 민주화 내지는 자유자상 무장화는 아시아인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나아가서는 자유진영 국가모두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3. 전후 일본의 재벌

가.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

재벌해체의 미국정책의 실제 조치로서 G.H.Q는 삼정, 삼능 등 15개 재벌에게 그 사업내용, 자본구성 등의 보고를 제출토록 하고 그후에 처리방침결정시까지 자본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5개 재벌에 대하여 자산동결지시를 내렸다. 당시 G.H.Q는 자산동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즉 재벌해체 및 대회사자산동결지시의 목적은 재벌의 봉건적요소를 제거한다는 것과 국민소득의 분배를 일반국민에게 미치게 한다는것, 특점대회사의 해산 예로서 왕자제처럼 타사업회사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 그들 회사상호간의 관계를 절단하는 것을 들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G.H.Q의 의도를 참작하여 삼정, 삼능, 주우각 본사 안전보선사에 관한 지주정리위원회안에 의한 해체안 즉 지주회사정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4대지주회사는 그소유증권의 전부를 위원회에 양도하고 재벌의 역원은 사직하며 양도된 증권이 최종적으로 처분되면 원소유자는 상환기 10년이상 처분 및 양도금지의 국채를 수령한다는 안을 G.H.Q에 제출한바 45년 11월 6일부의 G.H.Q 지령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승인하였고 일본정부는 즉시 그 실행에 착수하라 명령하였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안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1) 4대재벌본사 및 4대재벌가족관계의 일체의 재산처분이전금지

(2) 4대 재벌 외의 공업·상업·금융 및 농업의 기업결합체의 해체

(3) 사적독점 및 거래제한 등을 배제 저지하고 공업·상업·금융·농업등에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주는 법률의 제정이었는데 이들 지시가 뜻하는 바는 재벌의 지배관계가 첫째로 지주회사를 통한 주식의 소유에 있고 둘째로 인적결합에 있으며 셋째로 금융기관과의 관련이므로 이를 절단하는 동시에 4대 재벌뿐만 아니라 타재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적결합까지도 해체하는 동시에 금후 그러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요청한것으로서 4대 재벌의 해체는 그를 위한 예비적조치로서 양해된것이 있다.

일본경제에 있어 독점적지배력을 배제하고 자유경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재벌은 탈할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독점적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기성재벌인가 신흥재벌이냐를 가리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문제는 더욱 넓은 견지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G.H.Q의 지령에 의하여 “제한회사령”을 공포하고 재벌기타 주요회사의 해산을 제한하며 재벌 및 회사가 소유하는 각종 재산처분을 제한하게 하였다. 그후 G.H.Q지시는 전기 15개 재벌에다 3개사를 가하여 이들 18개 회사에 관계있는 336개사를 제한회사로 하였다. 제한회사는 그후 누차 추가되었다.

46년 6월에는 G.H.Q지시로 개인금융활동제한령이 공포되어 먼저

말한 4대 재벌이외에 점천이하 10개 재벌가족에 대해서 그들이 소유하는 동산 부동산의 매각 증여 양도 이전을 금지시켰다.

이리하여 일본정부는 재벌해체를 담당추진기관으로서 지주정리위원 지령을 공포(46.4.22)시행했고 그 발족은 8월8일에 동 27일 제1차총회를 개최하고 우선 5대재벌(삼정, 삼능, 주우, 각본, 안천보선사, 부사산업)을 지주회사로서 제1차로 지정함과 동시에 지주양도에 관한 근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을 먼저 하고 부동산기타의 재산은 후로 한다.

(나) 유가증권은 전부 양도받는다.

(다) 양도받은 유가증권은 실제로 위원회의 점유로 한다.

제1차지정이후는 순진하게 지주회사가 아니라도 지정을 하게 되어 동위원회는 46.11.21 천기중공업이하 40개사를 지주회사로서 제2차로 지정하였고 이어 12.3에는 재벌자회사중 삼정광산이하 30개사를 지주회사로서 3차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그 하부의 제한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 정리 운영상에 넓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주회사의 해체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한회사가 자회사나 손회사를 통하여 경제계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46년 11월 25일 제한회사의 지배금지업에 관한 지령을 공포실시하여 재벌해체의 강화를 기했다. 즉 이것으로서 제한회사 그 자회사, 손회사와 타회사와의 사이에 자본관계

인적관계 및 사업 관계를 절단했던 것이다.

47년 3월 15일 제 4차지정으로서 국제전기통신 등 2개사를 추가하여 재계의 해체는 착착 진행되었으나 (제 5차지정 47.9.26 대원합자회사이하 16개사) 이 정신은 당연히 신흥자본의 독점적 지배배제까지 미쳐야 했다.

즉 당시까지 방치되어 왔던 사적독점 혹은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급속히 배제하여 민주적인 수준화를 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재벌해체는 이를 위한 유력한 조치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해체된 재벌회사라 할지라도 기업개선경비법에 의해서 신회사를 설립함에 처해서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배제를 취택해야 할 것이고 또 재벌해체만으로는 신흥자본등이 누락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외에 장차 제기될 사적독점의 발생을 금지하는 항구적 조치 이를테면 독점금지법과 같은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이러한 조치는 모두 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조직, 기구면의 민주화는 촉진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들 조직기구안에서 이것을 운영한 많은 유력경제계인도 인퇴했으므로 재계의 인적기구는 일신하게 되었다. 즉 재벌가족 56명은 지정과 동시에 관계회사의 중역을 모두 사임하고 더하여 재벌직원 2,210명도 632개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들 다수의 유력경제인의 인퇴는 재벌해체에 의한것 보다 오히려 재계의 추방령에 의해서 중요회사의 수뇌가 일제히 추방되었던 예가 많았다. 이것은 46년 1월 4일부의 해로란담을 발단으로 하는 재계추방이

약 2,500의 주요회사의 주요공직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나. 경제자립화과정과 재벌

(1) 기술혁신

재벌해체를 거친 일본자본을 다시 숨쉬게 한 계기는 우리나라의 6.25동란이었다.

일본은 전쟁을 <천우>로 전환하는 전통적습성을 부활하여 특수라는 이름의 노다지로 경제분을 현출시켰다. 동란의 4년간 일본의 불확독고는 넓은 의미의 특수를 합계한다면 23 억불에 달했다.

그리고 특수는 당연하게도 대기업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불의 혜택을 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50년 가을경부터 열광적인 설비투자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런 경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기술의 도입경쟁으로 화했다. 이후 수년간은 이러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전수준을 돌파하여 <이미 전후는 아니다> 라는 시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50년의 소위 <신무경기>를 선계로 하여 기술혁신도 더욱더 본격적인 전개를 보여 무역구조의 변화마저 수반하면서 전개해 갔다. 경제자립화가 스로간이 되었고 생산성향상운동의 도입도 이때의 일이다. 오토메이션이 보급되고 화학공업은 섬유화학공업으로서 재편성되어 이른바 산업구조고도화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나아가서 59년말경부터 무역의 자유화가 시작되자 금반에는 국제경

경쟁력강화를 깃발삼아서, 수요에 선행한 근대화투자가 활발해졌다.
 한편 이러한 급변포의 기술혁신에는 모순과 애로가 없지도 않았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생산개시장의 확대는 촉진되었으나 기술혁신의
 자금원은 특수분야에서 시작되고 정부자금의 투입에 의존하는바 컸다.
 또 대기업의 상황하에서 설비투자경쟁은 이러한 속도를 재촉한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기간 국내의 자립적인 신기술의 개척은 뒤지
 고 말았다.

흔히 일본의 대기업을 두고 외국기술도입으로 국내에서 과다한 이
 익을 올린다고 말한다. 사실일본의 기술도입은 50년의 외자법실시
 이래 61년까지 그 주류를 이루는 각종기술도입만으로 1,670건이
 나 되었고 금액으로는 404,057 천불이나 된다. 산업별로는 기계를
 필두로 하여 전기기계 화학 금속 수송용기계의 순으로 기술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계공업이 총건수의 절반을 차지하여 이분야가
 가장 뒤졌음을 알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의존은 일본전체
 경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구나 마이너스면을 부정할 수 없다. 각
 기업이 앞을 다투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중복투자라는 낭비와 외
 화지출상의 불이익을 초래했다. 그리고 도입자체도 거의 미국일
 변도였고 또 이즈음의 경향이 선진국측에서 단지 기술의 공여라든
 가 기술료의 취득에 그치지않고 기업에의 적극적인 자본참가를 조
 건으로 삼는 경향이므로 자립화에의 관점에서는 위협이 아닐수 없
 었다. 이러한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이상이라고 할 정
 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지주는 기술혁신이었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에서 탈락한 산업은 사양화하고 경제발전의 불균등성은 타산업부문간뿐만 아니라 동일산업부문에서도 일어났다. 에너지-지원전환에 따른 석탄산업의 쇠퇴라든가 섬유산업에서 면직에서 합성섬유로 주역이 교체된 것도 이것을 말한다. 나아가서 기술혁신은 산업부문간의 불균등성이 확대된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소위 이중구조에 상징되는 독점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그 격차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산업구조의 고도화 : 전후 제생산구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경제는 거의 무로 부터 다시 출발해야 했다. 왜냐하면 전시중의 대포적 대기업=제벌의 폭격에 의한 직접소모외에도 재벌해체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중화학공업이 다시금 소생케 한 계기는 6.25 동란이었다. 일본은 이사변에 의해서 특수분을 일으키는데 있어 먼저 자동차등의 특수발주와 선박수출로 시작하여 철강 기계 화학 비료 등에 미쳤다. 섬유등 경공업분야의 회복은 훨씬 뒤떨어져 부문간의 불균등 발전이 이시기부터 명백해 짐으로써 산업구조는 **바야흐로 본격적인 변화들 나타내기 시작했다.**

55년경에 이르는 그후의 수년간은 정부의 합리화정책과 외국기술의 급속한 도입에 의한 근대화투자로 중화학공업의 자립으로 향한 노력의 시기였다.

55년경을 경계로 하여 일본경제는 전체로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이해말에 일본정부는 경제자립 5개년계획을 작성했다. 중화

학공업화가 비로서 처음 명백하게 경제정책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산업발전의 활로가 수출발전에 있고 수출의 중심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도화정책의 요인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고도화정책은 신장기계획(57.12)으로 인계되었고 중화학공업중 특히 기계공업의 조장, 발전을 중시하게 되었다. 60년말에는 소득배증계획이 상정되고 여기에서도 고도화는 경제정책의 중심과제의 하나로 간주되는 동시에 기계공업의 발전을 지양하였다. 그러자 이의 효과는 먼저 산업구성상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와서 농업인구의 감소(1차산업 55년 41% 60년 - 32.9%)와 제조공업내부에서도 중화학공업이 바야흐로 선진국수준까지 그 비중(약 50%)이 높아갔다.

(3) 자본구조

전전의 일본산업구조는 군수공업의 비정상적인 발전을 제외하면 섬유를 중심으로한 경공업부문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모습은 전전의 투자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삼정, 삼능등의 재벌은 상사부문에서 비중이 높은 이블테년 거생성이 강한 콘체른이었으나 그 내부에서도 역시 경공업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로서는 다분히 전후의 산업구조의 체편성에는 대응하지 못했겠으나 이것을 결과적으로 도우게 된것이 재벌해체였다. 이런 대수술을 통하여 재벌은 각기 전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탈피를 한셈이다. 그래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투자구조를 중화학공업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서 자본을 대형화하지

않을수 없었다.

프런트(공장시설, 기계의총체)는 거대하게 되고 단위당 투자액도 대규모로 되었다. 설비투자는 이리하여 전체로서 대형화되었다. 그래서 52 ~ 55년 평균으로 기계공업부문설비투자의 비중은 불과 8.1% 였던것이 62년초의 예상에는 20.4%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부문의 설비투자로서 그 과급효과도 큰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적인 투자에 견디어나가는 기업은 당연히 거대한 자본력을 가져야 했다. 기액의 자본력은 거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자기축적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국가자금 또는 금융기관의 의존도를 높이게 하고 혹은 거대기업간의 제휴, 합동등으로 진입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격렬한 자본지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산업구조고도화가 자본지도에 여하히 영향을 주었는가를 이하 4가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1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한 집단화의 확립 전전부터 일본의 큰 체론내부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한 역할은 컸으나 전후는 이것이 형태를 바꾸어 그 지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벌해체과정에서 금융기관은 거의 손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나아가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투자규모대형화에 따른 타인자본의존도의 증대 때문이다. 은행업자의 전후특징은 소위 협조융자라고 하는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특정은행을 간사은행으로 하는 복수의

은행의 협조로서 용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기업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가 갈수록 거대화하는 자금수요에 대해서 특정금융기관의 용자만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다수는 행과 거래관계를 가져야 하고 타방 금융기관측으로는 단독으로 대형화하고 장기화한 자금수요에 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일본 최대의 거래회사라 할 수 있는 일립제작소의 경우 산업성립은 구일산제라 할 수 있는데 용자관계에서 보면 삼화철 중심으로 제일, 부사, 흥은등 수십은행의 협조용자로서 이룩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금융기관에의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면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기업체열이 확립되어 그것이 주로 구재벌의 부활개편성제도에 설려하고 있고 둘째, 그러면서 그것과는 정반대로 협조용자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배타적결합의 부정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두측 면은 자본집중의 관점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모티-브가 되어있다.

제2는 하청기업의 계열화

기술혁신의 급진전에 수반하여 거대기업 그자신의 체질개선은 진척되었으나 그 하청부문인 중소기업은 여전히 낡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지배적이 었다.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대기업자체의 전진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거대기업측에서는 하청기업을 포함한 체계적인 근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 과점이라는 독점기업은 최종시장에 이르기까지의 가공부문이라

든가 유통부문을 포함한 통일적인 지배 체제를 확립해야 했다.

이러한 예는 철강업에 있어서의 본회사로서 괄번 제철이 마련한 합동 이라는 가 가공부문과 유통부문을 포함한 통일지배의 전형 합성섬유관계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계열화하는 형식의 자본 집중의 진행은 6.25 사변끝때 부터 시작하여 55년이후 현저하게 나타나서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심으로 계열화가 완성되어 갔다.

제3은 국제계열화의 발전계열화는 국제적규모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외자법시행(49년) 이래 61년까지 1970건 이것을 자본환원하면 80억불에 달하고 국별로는 미·독·스위스·영·불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고 총건수의 63%를 점하고 있다.

기술혁신에 촉발된 도입업으로 기계나 화학부문이 많다. 기계가 전수로 54% 화학 21%를 점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신삼능중공업 동지 석천도파마중공업 일립제작소 삼능조선 등 중기계메이커가 전수로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경향은 단순한 기술공여와 기술로지불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이 경영에 참가하기 시작한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먼저 석유정제회사에서 시작했다. 공동출자회사자체의 생산액이나 또 주식총수에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 대소로운 것은 아니나 단지 이러한 국제계열화의 진행은 국내의 자본집중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이너스의 요인으로 나타날것이라 내다 볼 수 있다.

제 4 는 새로운 기업진단의 편성

전후의 기술혁신은 계열화의 진행과 아울러 대기업그룹의 새로운 편성을 자극하고 있다. 계열화를 이룰때면 종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거대기업 상호 간의 횡적관계강화를 말한다.

구체별은 역시 불사조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부활이라 하기에는 다소 그모습이 이상적이었다.

우선 첫째로 기술혁신의 증추에 있는 신산업에 그부활이 명백히 나타나있다.

이점 가장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산업이다. 여기서는 대기업에 의한 새로운 자본집결이 강고하게 형성되어 버렸다. 동지들 중심으로 하는 삼정계의 일본원자력공산업(10여개사) 이들 재벌계기업의 공동출자에 의한 3회사 일립을 중심으로 고하 전기계의 제1 원자력회의 이들 5대그룹이다. 이것은 재벌계여러회사의 새로운 결집을 표시하는 동시에 은행과 톱기업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집단인 것이다. 확실히 재벌은 부활했다. 그러나 단 며일종의 근대적 금융자본으로서이다.

삼정계의 월요회, 5일회 삼능계의 금요회 주우계의 백수회 상노회등 사장회나 대표기업최고수뇌의 회합도 가지나 이것도 전전의 가족적인 지도부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가족적 콘채른의 성격은 재벌해체를 해소시켰다. 주도권은 전전의 상사부문에서 금융기관에 이행하고 내부실력자순위도 크게 변화하였다. 가령 삼정계에서는 사양화한 삼정광산을 대신하여 기술혁신중 축산업인 동지나 동양레이

운이 크게 상승하였다. 더구나 동지들은 그 자체가 거대한 계열
 을 가진 일대트러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동지처럼 콘체른의 틀에
 박히지 않는 거대기업이 옛적재벌과는 인연이 얇은 곳에 잠립해
 있다는 것도 전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립, 팔번, 부사, 일본동관
 송하, 삼능전기, 일본석유, 동양테이온, 풍전자동차, 신삼능중공업등 세
 계순위에 있는 대기업은 총체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것
 이다. 먼저 말한 협조용자의 문제도 이들 거대기업의 문제인 것
 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국가자금이나 외자와의 관계도 밀접하
 고 팔번이나 부사계철 또 9개전력회사는 원래 국영의 대기업이
 있다. 둘째 여기에 더하여 기업진단의 성격을 복잡하게 하고 있
 는 격렬한 Share 확대경주이었고 최대동기는 기술면을 통한 결합을
 위해서였다. 그 위에 그 설립에는 거래의 자금과 확실한 판매
 당이 확보되어야 했다. 삼정석유화학, 삼능유화, 소화유화 등의 신
 흥석유화학회사는 모두 몇몇 회사의 공동출자방식에 의해서 탄생했
 든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명백히 다음시기에 오는 기업 합동
 에의 일보적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전진된 기업
 진단 그것이야 말로 콤비나-드라고 호칭되는 것이다.

다. 기업진단 = 콤비나드

콤비나드화의 움직임은 55년에 석유화학공업의 육성대책이 통
 상성에서 결정되어 여기에 의거하여 석유화학제1기계획이 착수되던
 서 부터이다. 이때 전국각지에 석유화학센터가 탄생하고 작기 수
 개사의 기업이 집중되어서 콤비나-드를 결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콤비나-드는 종래의 트러스트나 콘체른과는 상이한 새로운
형의 기업진단이라 한다. 그러면 그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첫째 : 타기업단과 콤비나-드를 구별하는 최대의 특징은 기술적연관
성의 강인성에 있다.

둘째 : 콤비나-드형성에는 방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적관련성이 표면에 있고 거액의 자본이 요구된다는 두
가지점에서 콤비나-드내의 기업관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콤비나-드에 있어서 개별체의 콤비나-드가 차지하
는 비중과 강점이 대단했다. 즉 선발 4 콤비나-드중 일석계를 제
외한 3 콤비나-드는 삼정, 삼능, 주우, 의 개별체가 차지하고 있는
데 그중 주우는 소위 기업내콤비나-드가운데 3 개를 차지하고 있
었으나 그후 나아가서 제 2 콤비나-드에의 진출을 실시하며 계획하
고 있다. 이외에 부사은행계열의 진출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콤
비나-드의 진출에 있어서 개별체나 계열콤비나-드의 진출이 현저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콤비나-드의 또하나의 특징은 삼정석
유화학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회사설립에는 삼정계각사가 일치하
여 자본참가를 하였다. 즉 삼정광산, 삼정화학, 삼지합성, 삼정금속,
광업, 동양고압, 동양레이온, 삼정은행, 홍아석유가 투자했고 삼정물산,
삼정조선, 삼정생명, 대정해상, 삼정신탁은행 등도 각기 출자했다. 그
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삼정체벌의 총결집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예는 삼정콤비나-드에 그치지 않고 삼능개별계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삼능유화는 삼능계 10개사를 결집해서 탄생한 것이다. 이리하여 계열콤비나-드가 증가하고 재벌계는 점차 그 강점을 발휘하여 오고 있다.

다만 이와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진단이 철강 전력 석유등 구재벌의 틀을 벗어난 기업에서 우선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고 지금은 구재벌을 구재벌형태로 부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라는 것과 구재벌의 기업진단도 각기 축적된 힘을 발휘하여 새로운 기업진단으로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확실히 재벌은 부활했다. 그러나 그재벌은 종래와 같이 봉쇄적이고 반능적인 형태가 아니라 기술적기초에 의거한 거대기업으로서 형성되어 있고 또 그 기업마저 일본국내에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과의 제휴로서 맺어져 있는 것이 금일의 실정이다.

다. 군수산업과 재벌

전시중 일본군수기업은 직접 간접으로 거대기업(재벌)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45년 9월달 현재에 삼정재벌은 직접 177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중전사 삼능은 76개사 주우는 120개사 안전은 94개사 아사노는 84개사 점천은 172개사를 직접지배하고 있었다. 이들 8대재벌산하의 불입자본금은 일본전국의 회사의 불입자본금의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 용자관계 하청관계 등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는 무수했다. 특히 중화학공업부

문은 압도적으로 재벌의 지배하에 있었다. 패전후 연합군이 재벌을 전쟁이외에는 조립할 수 없는 경제조직으로서 규정하여 배체를 행한것은 결코 이유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후 G. H. Q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재벌의 장악하에 있었던 일체의 병기탄약 및 군용기계의 제조 및 분배를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재벌해체의 실패는 불철저했다. 재벌해체의 종결을 이미 47년말경부터 시작했다고 본다면 일본군수산업의 부활도 대략 이즈음부터의 일이다. 즉 미국은 긴 안목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장차의 아시아의 방벽으로 내다보는 전지로 정책을 전환한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일본경제생활전체에 대한 재벌의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배상분제의 사실상의 중지도 48년중엽에 이루어졌다. 6.25 동란은 일본경제에 있어서나 재벌 나아가서 군수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동란으로 말미암아 미군이 일본으로 부터 매상한 특수는 전쟁개시일자로 부터 8월 28일까지 약 2개월에 무려 144억원에 달했다. 9월말에는 그것은 348억원에 달했다. 그후 53년말까지의 3년반사이에 일본이 특수에 의해서 취득한 수익은 약 24억불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광공업생산은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특수는 처음부터 본래의 의미의 군수품(병기)에 대한 발주는 근소했다. 그러나 동란이 계속해감에 따라 군수산업의 주체는 점차 대기업으로 이행했고 50년에서 53년사이에 특수계약의 10대회사는 소송제작소(주우계) 신호계강(제일계) 대판금속공업

(주우계) 옥화성(주우계) 일평산업(주우계) 일본건설(삼능계)
주우금속공업 대동제강(부사계) 대관기공 등으로 되어 이들기업은
거의가 직접 제벌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이다. 6.25의 휴전
협정이 조인되자 일본의 특수는 감소하고 군수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체열외에 있었던 기업은 자
금회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전쟁후에도 존속할 수 있었던 기업은
계열계열하에 있는 기업이 대다수였고 그리하여 대기업자신에 특수가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사실이 55년 이후 일본에 있어서의 병기국산
화의 소지를 닦는 데에 기여했다. 전후 일본군수산업의 제2 단계는
54년 체결된 M.S.A 협정에서 구획지워진다.

왜냐하면 동협정에서는 일본은 직접 및 간접침략에 대해서는 자국
방위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원조로서
공급되는 농산물매각대금은 방위생산 및 공업력증강에 사용되어야
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러한 약속에 의하여 군비증강
의 조치로서 방위2법(방위청설치법, 자위대법)이 시행되고 자위대
의 발족을 보게 된것이다. 동시에 자위대발족은 여기에 비로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병기를 자국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계기를 발
견했다는 것을 의미한것이다. 54년에서 56년초에 이르는 동안
방위생산위원회, 병기위원회 혹은 자유민주당안에 방위생산연락협회등
많은 기관이 설립되고 항공기공업의 육성, 탄약생산의 증강 방위생산

의 정비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결같이 군수산업의 육성을 요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망의 선두에는 방위생산위원회가 있었고 위원회의 주멤버로서는 삼능중공등 제벌계 대기업의 참가가 있었다. 대기업을 위시한 기업의 이와같은 움직임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마침내 장기방위계획을 작성했다. 이것이 제1차방위력정비계획(58-60년도)이다. 제1차방위력정비계획은 소요경비에정금액을 4530억원으로 잡아 충분한 경비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이것으로라도 장비국산화는 일보진전할 수 있었고 58년도를 경계로 하여 방위청국내조달액이 특수를 증가할 수 있는 모멘트를 제공했다. 항공기생산 함정 잠수함생산이 개시되고 이런 병기등은 자본과 기술면에서도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대기업에 생산이 쏠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제1차방위계획은 장비국산화 군수생산체제의 확립에는 불충분하였다.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적인 군수품조달과 국산화계획을 포함시킨 장기방위계획이 필요했다.

제2차방위정비계획은 62년에서 66년도까지 약 11,500억원 ~ 11,800억원의 경비로서 방위력의 증강을 꾀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제2차방에 있어서는 산업경제측면에서 말한다면 대기업의 요구가 강열히 반영되어 장비의 국산화를 내걸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즉 경단연방위생산위원회와 자유민주당 정부기관의 대표, 3자로서 구성된 방위산업국산화간담회를 설치하여 목하의 급무로서 방위산업의 국산추진이 요청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장비국산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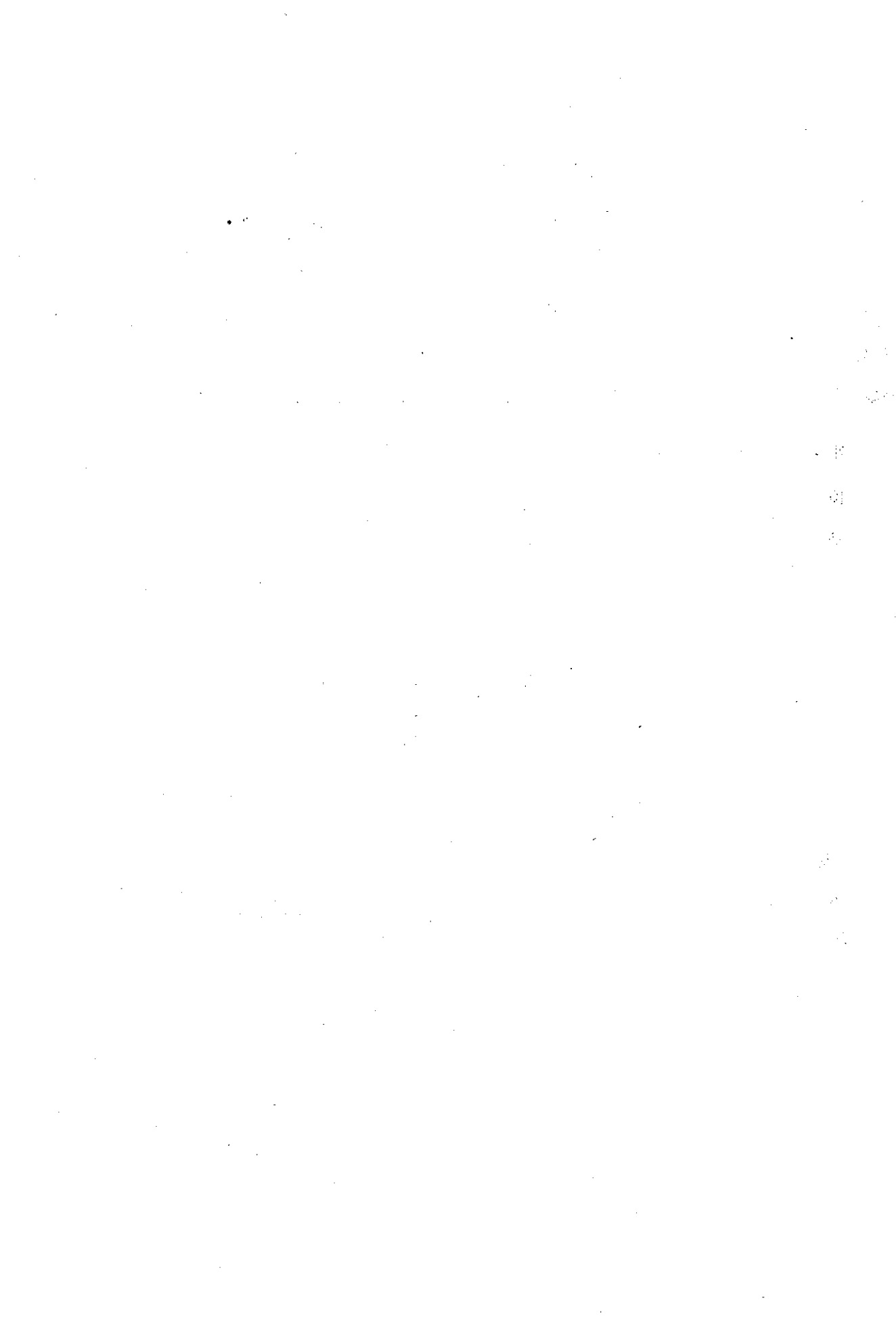
제2 차방의 중점항목으로 하는 동시에 장기일괄발주, 계약선불제도등을 채용하여 산업층의 많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돌이켜보면 방위산업은 6.25 동란의 특수에서 본격적인 군수생산으로 이행하고 조달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기업-재벌계는 군수산업에 직접 진출하여 생산의 핵심이 되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간단한 통계로서 살펴보면 55년 이래 500만원 이하의 계약은 매년감소해가고 있는데 비하여 1,000만원이상의 계약은 54년도 7.6%에서 61년도는 15.2%로 2배이상 증대해가고 있다. 그중 1억원 이상의 계약은 같은기간 0.6%에서 2.4%로 약 4배증가되어 대기업의 계약이 증가되어 감을 알수 있다. 그리고 2.4%는 금액으로서 692억원에 해당되며 금액은 전체의 61%를 점하는 비중이다.

그리고 57년이후에는 6.25 동란중 주역을 맡았던 기업은 소송제작소를 제외한다면 모두 그모습을 찾을수 없고 군수산업은 완전하게 6대기업에 집중됨을 볼 수 있다. 65년도의 방위청조달등록업자는 제조 1,070사, 구입 262사 계 1,332사였는데 유자격자의 1%이하의 대기업이 계약금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수량적으로 본다면 일본정부의 방위비나 방위산업은 경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점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100여사의 거대한 독점기업임으로 이중 대기업이 방위수주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방위수주는 이들 기업으로서도 무시할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일본산업의 밑바

탁에는 이미 군수산업은 정착한것으로 본다.

재벌의 부활 그것은 결코 단순한 구형태의 재벌의 부활은 아닐지라도 재벌은 군수산업분야에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다.



4. 일본의 국방정책

가. 국방정책결정과정

(1) 국방회의

국방회의는 방위청설치법에 따라 국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내각의 자문기관으로서 1956년 7월에 발족하였다. 이 회의체는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부총리인 내무대신 외무대신 대장대신 방위청장관 및 경제기획청장관을 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에는 관계국무대신 통합마료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시킨다. 법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은 국방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가) 국방의 기본방침

(나) 국방계획의 대강

(다) 방위계획에 관련되는 산업 등의 조정계획의 대강

(라) 방위출동의 가부

(리) 기타 총리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에 관한 중요사항

(2) 국방의 기본방침

국방의 목적을 직접 및 간접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수호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간의 협조를 도모하여 세계평화의 실현을 기한다.

(나) 민주를 안정하고 애국심을 고양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다) 국력, 국정에 대응하여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협의한다.

(라)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 장래 국제연합이 유효히 이를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갈수 있을때 까지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이에 대처한다.

나. 제 1 차~제 3 차 방위계획

(1) 제 1 차방위력정비계획

전술한 국방의 기본방향이 정해진후 이에 따라 당면의 방위력정비목표가 심의되어 1957년 6월에 결정되었다. 이것은 1958년에서 1960년까지 대상기간으로한 제 1 차방위력정비계획이다.

제 1 차방위력정비계획

육 상

자위관 18만명중 주공부대 135,000명 (방면총감부 2, 관구대 6, 혼성단 4, 공정단 1, 특과대대 16, 고사특과대대 8, 특차대대 4, 시설대대 8, 헬리콥터부대) 후방관리대 45,000명, 일반적원 15,000명 예비자위대 20,000명

해 상

잠정은 경비함 약 50척 잠수함 5척 초계정 26정 어뢰정 9척 소해정 66척 구잠함 22척 기타계 190척 항공기는 P2V 32대 S2F 60대를 주력으로 하여 약 200대 인원은 약 34,000명

항 공

사용기 900대 연습기 370대 부대는 주간전투기 18대 전선 후전투기 9대 정찰기 3대 수송기 3대 테 - 다 24개소 요지방공 8대대, 인원 41,586명 이상의 목표는 내외경제의 추이에 따라 수시 재검토되는 것이며, 특히 과학기술의 퇴보에 즉응해서 신무기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편성정비의 세신을 도모하고 방위력의 질적충실을 기한다.

이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는 항상 경제안정에 유의하며 특히 년차별의 증세에 대해서는 재정사정을 감안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제정책과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이를 결정한다.

(2) 제2차방위력정비계획

(가) 기본방침

① 미일안보조약을 기조로하여 제1차방위력정비계획에서 달성된 골간적자위력을 정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병기기술의 진보에 즉응해서 정비의 전반적 개선과 군내회를 도모한다.

② 통신시설보급정비대책을 정비하고 연료 특히 탄약에 대해서는 약 1개월분의 전시비축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국내보급체계를 강화한다.

육 상

1966년(41년)년도말, 정원을 180,000명으로 하여 13개사단을 편성, 그외에 예비자위관 30,000명 지대지미사일 실험대 30형로켓트실험대를 편성, 지대공미사일부대로서 「나이키」 및

「호-크」 2개대대를 편성, 국산중형전차 131대 경전차 572대보
유 기관총 소총 차량 화기를 생산, 「해리콧타」 162대를 증강
하고 부대기동력을 강화한다. 항공기는 계 294대 보유

해 상

1966년까지 노후화한 자위함 25,600톤 대신에 47,360톤(39
척)을 신조하고 계 143,669톤(229척)을 보유, 신조함정은
호위함 11척 잠수함 5척 연습함 1척 부설함 1척 수중인선
1척, 항공기는 대형내잠초계기 P2-V7대를 계속 생산하는 외
계 235대를 보유하고 내잠해리콧타기지로서의 대철 무화 소송도
대훈의 각기지를 정비한다.

항 공

1966년도말 보유기는 1,036대로 한다. F-104 전투기 7비행대
를 편성한다.

반자방식경계관제조직을 건설하고 방공체제를 확립한다.

(3) 제3차방위력정비계획

1966년 11월 제3차방위력정비계획의 대강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기간은 1967년도에서 1971년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국방의 기본

일본국의 국방은 「국방의 기본방침(1957.5.20가결)에
의거 근접제국과의 우호관계를 확립하고, 국제긴장의 완화를 도모하
는 등의 외교시책과 경제적 사회적발전을 도모하는등 국가의 안전

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재정제시책등을 강구함과 동시에 일·미안전 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유효한 방위력을 정비하고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수호함을 기본으로 한다.

(나) 계획의 방침

① 일반계획

일본이 정비한 방위력은 통상병기에 의한 국한전 이하의 침략사태에 대하여 가장 유효히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3차 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현재의 방위력을 기반으로 하여 내외의 정세, 국력의 신장 국제적지위의 향상을 감안해 가면서 육, 해, 공자위대의 내용의 충실강화를 도모한다. 또 기술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장비의 근대화 및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비의 적절과 국산을 행하며 방위기반의 배양에 노력한다.

(2) 주요정비목표

제3차 방위력정비계획에 있어서 주요정비목표는 다음과 같다.

㉑ 육상자위대 관계

자위관의 편성정수를 18만명으로 한다. 기동력을 향상시키고 방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헬리콥터 및 장갑차 및 지대공유도탄부대를 증강함과 동시에 신장비의 도입을 행하여 장비체제를 개선하고 전차 대전차화기의 갱신 증강을 행한다.

㉒ 해상자위대 관계

호위함 잠수함등 각종함정의 증강 근대화물 기도함과 동시에 신고정익대잠기 비행정 등을 정비한다.

(나) 항공기자위대 관계

중요지역의 방공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대공유도탄부대를 증강하고 신전투기의 정비에 착수함과 동시에 경계 관제조직의 자동화를 완성하는 등 경계 관제능력의 향상 근대화를 기도한다.

(㉠) 기술연구개발관계 고등연습기, 레-다, 탐제경계기, 수송기등의 항공기 단거리지대대공유도탄등의 각종유도탄 기타 각종의 정비기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행함과 동시에 기술연구개발채재를 강화한다.

(다) 계획의 실시

제3차방위력정비계획은 나라의 경제력의 신장에 대응하여 나라의 타의 시책과 조화실시하는 것이며 각년도마다의 예산은 그때의 경제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타의 일반재시책과의 균형을 고려결정한다.

이상의 정비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액 2조 3,400 억원으로 추산된다.

다. 각 정당정책의 비교

각 정당이 지금까지 발표한 「안보장기구상」을 대별하면 자민당의 「일·미안보체제지지론」과 민사, 공명양당의 「안보체제의 조전부론」과 사회, 공산양당의 「안보폐기론」의 3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정당의 정세를 조사해보면 이러한 장기구상이 진전될때까지는 특히 자민 사회 양당내에서는 활발한 당내논쟁이 있었다.

라. 1969년 국방백서

방위청은 자주방위의 추진에 따라 일본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 「일본의 방위」라는 「국방백서」를 작성하였다. 국방백서의 구성으로서 서론, 총론, 각론의 3분야로 나누어 총론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극동의 군사정세 전략적지위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방위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위의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헌법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자주적인 방위노력을 하면서 방위력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미일안전보장체제를 취하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방위력정비의 방향으로서

◎ 간접침략에 대처하는 방위력

◎ 소규모의 무력분쟁에 대처하는 방위력

◎ 국지전에 대처하는 방위력을 둘러 전면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미국의 핵보복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특히 여기서는 비동맹중립주의를 명백히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원안총론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1) 일본안전보장과 방위력의 필요성

(가) 극동에 있어서의 군사력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동서양진영의 병력배비의 상황을 개관하면 전반적으로는 공산진영측이 우세하며 특히 육상병력 잠수함항공기의 수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에 대하여 자유진영내의 극동체국은 육상병력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강력한 전략보복력과 기동지원병력을 그 배경에 가지고 있다.

중공은 7억 94만인의 인구와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아시아에서 유

일한 핵보유국이다. 중공의 주력은 육군이며 그 세력은 약 150개사단 약 250만명 (그외에 보안국경경비원 약 30만명이 있다)이며 해군은 함정 약 900척 약 20만톤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함정은 잠수함 33척외는 어뢰정연안호위함등 소형함정이 주력이다. 또 해군에 약 2만 8천명의 해병대가 있다. 공군은 항공기 2,500대 (그외 해군지휘하에 있는 약 500대의 항공기가 있다)가 있으나 구식의 유격전투기가 주력이다. 중공의 핵무기 및 그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의 개발에 대해서는 1964년 10월 제 1회의 원폭실험 이래 1968년 4월까지 8회의 핵실험을 행하고 표준형원폭 (20KT) 200KT급의 강화 원폭 3매가톤급의 수폭의 3종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966년 후반부터 탄도 "미사일"의 시사를 행하고 있으며 사정 2,000km급의 탄도 "미사일"을 이미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욱 대륙간탄도탄 (ICBM)에 대해서는 1970년대로 시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더욱 중공은 "미사일" 적재잠수함 1척 (쏘련의 대잠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쏘련은 1968년에는 정규군의 총병력을 322만명으로 하고 육군은 약 200만명 140개 사단으로 극동에는 약 24만명 약 17개사단이 배치되어 있다. 해군은 총톤수로는 세계제 2위이며 그주력은 잠수함대이고 약 330척의 재래형동력잠수함과 약 50척의 핵동력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핵잠수함중 약 13척 재래형동력잠수함중 약 30척은 탄도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핵동력잠수함가운데 약 25척 재래형동력잠수함 20척은 사정 약 500km의 대선순항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다. 그중 극동에는 함정 약 600 척, 약 60만톤의 배비되고 그중 잠수함은 약 100척이다. "미사일"적재잠수함은 대부분이 북양함대와 극동함대에 배비되고 있다. 이외에 항공기 약 12,000대 중 극동에는 약 2,000대가 배비되어 있다. 이외에 전시로켓트 ICBM, IRBM MRBM은 약 1,800 km IREM는 약 3,200 km 이상의 사정을 가지고 소련의 서부 및 동부국경부근에 전개되어 서구, 일본 및 중국의 비행장과 같은 대부분의 전략적 및 준전략적목표를 「커버」하고 있다.

소련의 함정이나 항공기가 일본근해 또는 수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반도는 제 2 차대전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현재도 38도선의 군사 경계선양측에 비무장지대를 두고 대峙하고 있다. 북괴측의 무장공작원 및 병사가 비무장지대 및 경계선을 넘어 남침을 한 사건은 1967년 이후 격증하고 있으며 다수의 무장 「개리라」가 침입하고 있다. 또한 동년 1월에는 미국의 선박이 나포되었으며 4월에는 미정찰기가 북괴전투기에 격추된 사건이 일어났다. 북괴의 육군병력은 약 35만명 (19개사단) 해군은 함정 약 180척 15,000톤 공군은 약 600대로서 전병력 약 38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이 모두 소련제의 병기로서 장비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총병력 약 62만명이며 육군은 약 55만명 (29개사단) 해군은 함정 약 80척 해병대 약 30,000명 항공기는 약 300대를 보유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2) 일본 안전보장의 방책

(가) 안전보장의 대상

국방의 기본방침으로서 국방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일본국의 독립과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다.

자위대법으로서 「자위대는 일본국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되어있다.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다는 것은 우선 국가 및 국민의 생존을 수호한다는 것이다. 즉 외국으로부터의 위협이나 침략 또는 간섭을 배제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토를 타국으로부터 절령당한다든가 파괴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행동의 자유능을 수호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발전과 국민 번영의 기초조건인 정치체제 경제사회체제 등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로 일본헌법에 정해진 체제와 그 기본인 민주주의이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주권이 선거된 의회를 통해서 행사된 의회제민주주의이며 둘째로 의회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다. 셋째로는 이상과 같은 정치사회체제를 기초로한 국민의 생활양식이며 현재의 일본의 번영을 가져온 경제체제인 것이다.

(나)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군사책수단

(방위력의 필요성)

국가로서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처할 수단으로서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 일본이 직접 간접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않다고 생각하는한 이러한 침략에 대비해서 방위력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방위에 대한 기본적 생각

(가) 자주방위와 미일안전보장체제

일본은 중립 또는 비동맹정책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중립정책 또는 비동맹정책에 의해서 일본을 방위한다는 것은 가장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리적지형적조건 전략적지위 등으로 보아 중립유지에 필요한 조건에 합치될 수 없으며 중립유지는 곤란하다는 점

② 일본의 통제력 공업력등은 동서간의 힘의 균형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서방측의 진영에서 격리되어 중립으로 되면 동서간의 균형은 파괴되고 극동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③ 중립정책 또는 중립주의를 취하게 되면 방위비가 상당한 정도로 증대하고 그 방위비의 압박으로 국민생활은 저하되고 경제의 번영 복지국가의 건설도 어렵다는 것이다.

④ 일본은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국토가 좁고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천연자원의 혜택이 적기 때문에 경제활동은 해상수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자유주의제국과의 무역이 9할정도 미국과의 무역이 3할정도이다. 만약 일본이 중립화했을 경우 자유진영과의 무역은 상당히 후퇴한다는 것이다.

⑤ 중립에는 전술한 중립 또는 비동맹과는 달라 본래는 공산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정책적 전략적으로 중립을 부르짖는 주장이 있으나 일본으로서는 농조하지 못한다. 이러한 입장의 중립

은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민주적인 정치사회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중립이나 집단안전보장이냐를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4) 방위력

(가) 비상사태의 양상

① 간접침략

간접침략은 국내에 있어서 내부붕괴등의 제공작을 행하고 따라서 내란소우를 야기시키고 이를 확대시켜 대규모의 것으로 하여 일부 무력공격을 병행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일본의 지리적조건 폭력을 수반하는 각종반대투쟁등 국내정세등으로 보아 간접침략을 야기시킬 위험성있는 잠재적요소는 적지않다. 천재지변 경제적 혼란등 불측사태의 발생등을 계기로 「제네스토」등을 병용하여 간접침략이 일어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① 우선 예상되는 것은 어업분쟁 영해 영공침범등에 따라 일어나는 소규모의 무력분쟁 주변국지진이 수시적으로 파급하여 행해지는 부분적인 무력공격등 작은 무력공격이다.

② 일본을 직접대상으로 하는 무력공격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핵대국이 참가하면 일·미공동방위에 의해서 일본을 지원하는 미국과의 전쟁 즉 핵대국간의 전쟁이며 전면전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것이 핵의 무제한사용이 될 경우 양자 모두 자발적 행위로 되기 때문에 상호억제작용이 강하게 작용하여 오히려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는 탄력성있는 전략이 취해져 상호간에 사용하는 병기 전역목표등을 한정하고 전쟁양상으로 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5) 일·미안전보장체제

(가) 일·미안전보장체제의 방위상의 의의

① 일·미안보체제와 협력

이 안보조약은 국연현장 태두리안에서 연결된 것이며 일미양국은 현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 행동할것 국연의 강화에 노력할 것을 명백히하고 있으며 국인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때에는 이 조약은 효력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의 정신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일미공동방위장치는 현장이 규정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권의 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순수한 방위적인 것이다. 따라서 일미안전보장체제를 군사동맹이라는 자가 있으나 군사동맹이라는 말의 내용이 제2차대전이전에 있어서 각국의 정책동맹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명백히 다른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② 안전보장체제와 억지력

일본에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일·미양국이 공동으로 이에 대처할 것을 정한 것이다. 즉 외국으로 부터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힘으로 되어 있다. 해병기의 공격에 대해서는 전연 무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 밖에 별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을 공격하는 나라는 미국의 보복력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일본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일·미안보체제와 방위비

국방은 안전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의 배경이 없이 일본 1개국 만으로서 독립을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낮은 방위비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립국인 스위스, 스웨덴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위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 총생산에 접하는율은 2.4%, 3.9%인데 비하여 일본은 0.9%밖에 안되는 것은 일·미안보조약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시에 있어(소화10년~소화17년) 일본의 군사비는 일반회계의 평균 70.2%를 점해 국민생활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6조7,395억円에 달한 소화44년도 일반회계중 방위관계비는 4,838억円이며 전체의 7.18%에 불과하다. 일본경제가 년 약 10%의 높은 성장을 계속해 온것은 일미 안보체제하에서 일본의 방위비가 최소한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나) 일·미공동방위체제

① 상착육침공에 대해서는 초기에 미군의 원조가 늦어져도 어느 기간동안 침략자에 지역점령등의 기성사실을 만들게 하지 않는다.

② 해상방위에 대해서는 국가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상 수송량을 확보한다.

③ 항공침공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항공우세를 확보한다.

5. 제 4 차 방위력정비계획의 전망

「사도」수상과 닉슨 미대통령과의 회담으로서 오끼나와의 일본복구는 1972년중에 국민총회의 형식으로서 실현하게 되었다. 일·미공동성명 발표직후 미정부고위당국은 「오끼나와 반환을 계기로 일본은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은 일본의 방위책임이 극동에 있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언명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오끼나와 반환으로 일본의 방위반경이 확대된다고 하는 견해는 미국의 통설이며 일본이 세계경제에 있어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시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패전후의 평화헌법에 의한 미국의 보호로서 성장한 전후 일본은 국제정치의 주류를 피하여 금일에 이르렀으나 냉엄한 국제정세하에 자기의 갈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닉슨대통령의 생각은 방위면에서 다소 위험이 있어도 전선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기본노선인 것이며 오끼나와 반환의 타협도 그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불은 군사력의 목적은 전쟁역지가 주안이며 광의의 정치력으로서 국책수행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대한 핵병기는 그 목적달성에는 유효하나 현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병기로 되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통상 병기에 의한 국지침입과 공격이 야기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세계각처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자위대가 통상병기에 의한 국지 및 제한전쟁의 역지능력을

보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적어도 무기를 가지고 의식과 싸울 것을 목적으로한 집단은 헌법제 9조 여하를 불구하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다. 따라서 자위대를 논함에 있어 이를 군대로 취급하며 장비나 군사기술등 군대와 동등하게 사고함을 전제로 한다. 또한 제 3차 방위력 정비계획은 1967년에서 1971년까지의 5개년이며 현시점에 있어서의 자위대의 업무계획은 그 제 4년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 4차 방위력 정비계획은 1972년도에서 1976년도까지이며 제 3차 방위에 계속되는 것으로서 5개년간을 목표로한 장기선망하에 일본의 방위력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 평화공존전략

스타린시대는 그의 독특한 테로리즘에 의한 권력주의(대내) 및 대외적으로는 힘에 의한 정책으로 시종하여 세계적인 냉전시대를 연출하였다. 그 후임으로 등장한 후루시초프는 핵시대에 있어서 대외정책면에서는 「핵전쟁은 피피한다」라는 「평화공존」의 세계전략에 따라, 특히 미국에 대처하여 대내적으로는 비스타린화를 추진하여 국민생활향상이란 정책을 취하고 자유화에 있어서도 다소 기여하는듯 보였다.

현재의 브레즈네프, 코시킨 등의 집단지도체제는 안으로는 자유화 민주화 생활수준의 향상을 회구하는 국민적 요망과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사상적 경제적 군사적 압력에 대처하고 특히 모택동의 충공으로 부터 공산제국주의라는 맹렬한 공격을 받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다극화 현상으로 그 고민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소련의 입장에서
「평화공존」 전략은 그 실존에 있어 동서간의 핵전쟁의 위기를 회
피하면서 국제긴장의 완화를 명분으로 하고 서방자유진영의 단결을
와해시켜 동서간의 군사적 경제적 력관계를 역전시키고 언젠가는
서방자유진영보다 우세한 힘을 배경으로 세계전략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소
련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구주안전보장체제를 제창하고 있는 것
도 NATO의 결속을 이완시켜 구주에 있어서의 동서간의 균형을
붕괴시킬려는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핵전쟁시대에 있어, 전면전
쟁의 위험성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접침략 대리전쟁에 의한
침략의 위험성의 그 반대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하에 있다.

나. 대일 기본전략과 아시아정세

1959년말부터 소·중공간의 이론투쟁의 대립은 점차 판성의
증대에 의하여 정치화되고 추차적으로 험악한 길을 거쳐 1969년
4월의 중공구전대회, 동년 6월 모스크바국제당회의, 우스리국경중
들 신강성국경분쟁을 거쳐 결정적단계에 도달하였다. 현재 국경선
획정회의가 열리고 있으나 소·중공의 대립관계는 베트남전쟁과 더
부러 아시아의 안정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 위협할 것이다.

아시아는 미·소·중공의 3대 세력의 3파전속에서 일본과 기타 후
진국이 그 독립과 안전을 여하히 보장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거반 6월 모스크바국제공산당회의에서 브레즈네프가 공식적으로 아
시아집단안전보장체제를 제창한 것은 소련의 대중공포위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전 구주안전보장체제의 제창과 마찬가지로 SEATO,

CENTO, 일미안전보장체제를 침략적 군사부록이라고 비난하고 이에 대치한 전략으로서 특히 일본과 미국과의 안보체제가 중요공격목표인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1952년 제1차 일미안보조약당시는 소·중공 공동으로 일본을 자유진영 특히 미국에서 격리시켜 일미안보체제를 타파하고 반미중립화를 소·중공 양국이 기도하였다.

현재 일본의 사회당의 무방비중립론은 그 계통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중공과 소련의 대립으로 양국의 대일선동전술의 차이점이 불어났다. 중공은 일본의 대중투쟁을 선동하여 이를 혁명투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반일중공계 학생으로 표현되는 과격파행동을 시도하고 있다.

소련은 외교적압력과 국내대중투쟁의 이론적 심리적압력을 일본정치변력에 집중하는 선동전술로서 일본공산당계에서 표현되는 운동방침 바로 그것이다.

중공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쌍방은 대일접근정책으로선일우교, 협력등 외교공작을 표현으로 추진시키는 반면 내면에 있어서는 대일조반공작과 일미안보체제의 반대투쟁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중공은 일본사회당 총평과의 계급적 연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일본이 현재 처해 있는 지위는 다음과 같이 관찰할 수 있다.

이 국제적·환경조건이 일본의 방위 특히 제4차방위에 크게 반영될 것이다.

(1) 일본은 선진자본주의국가로서 세계최대의 공산국가인 중공과 소련하고 가장 인접한 국가이다.

(2) 일본은 구미자본주의국가군에서 멀리 떨어져 고립화한 위치에 있다.

(3) 일본의 국력 경제력은 중공과 소련에 있어 최대의 매력이다.

(4) 일본 열도에만 비유된 중공, 소련에 있어 커다란 전략적 장애로서 형성되어 있다.

(5) 번영하는 일본경제의 원료는 대부분이 해외에 의존하고 또한 해외수입에 의존한다.

이상의 제조조건은 중공이나 소련 양국이 일본을 자유주의진영에서 분리시켜 자기진영의 지배하에 들리는 의도를 갖게 하며 이어 일미안보조약을 폐기시키고 반미중립화를 기도하게 한다.

중소관계의 여하를 막론하고 일본은 중, 소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쟁탈목표이며 실사, 모택동이 죽고 중공과 소련의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일층 대일압력은 가중될 것이다.

나. 극동의 군사정세

진술한 정치, 외교전략을 기초로 중공, 소련의 병력은 점증하는 경향에 있으며 특히 중공의 핵장비는 착수 실행되고 있다.

극동소련군의 병력은 육군 24만 17개사단, 해군 12만, 600척 60만톤 특히 그 잠수함 155척의 병력은 경시할 수 없으며 서태평양을 제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군 7만명, 2,000대 기타 로켓트병력인 ICBM, M/IRBM은 각처에 전개되어 있다.

또한 신강성국경에 10개사단, 약 13만명의 병력이 전개되어 있

다.

전 소련병력은 현재 육군 220만명 140개사단,
해군 2,400척 250만톤 비행기 900대
공군은 10,100대 로켓트 25만 ICBM 약 1,000 M/IBBM 750,
특히 ICBM은 미국과 균형을 보유하고 경시못할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거반에는 TV95 배아형기가 일본을 일주한 사실이 있으며 항공자위
대의 영공침공에 대한 사전방지를 위해 긴급 발전한 것이 연간
300회 이상이며 일본해에 있어서도 접근한 소련기 약 100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정찰비행이며 속칭 농경급행이라고 불리
워지고 있다.

중공은 현재의 해군력으로는 일본에 대한 직접 침공은 생각할
수 없다. 주로 간접침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핵장비
특히 중거리탄도탄의 전개 및 수폭 보유와 이를 배경으로 한 사
상공세는 일층 활발해 질 것이다.

1964년 이래 5회에 걸친 핵실험을 행하고 있다. 현재 원폭보
유는 20~30으로 판단되며 수폭은 개발중이며 70년도부터 생산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 1L~28경폭격기 TU-16중폭격기와 MRBM
(중거리탄도탄)은 실용단계에 있으며 수폭탄두의 IRBM은 1970년
경부터 또한 ICBM은 1975년경부터 전개하여 실용가능케 될것이다.
중공의 병력은 육군 250만, 150개사단(민병 약 300만)
해군 52척 20만톤 그중 잠수함 30척 500대
공군 120만 2,500대이다.

이러한 극동의 소련, 중공의 병력에 대하여 미태평양군(SAC제와)의 병력은 육군 약 45만명 9개사단 약 3,500대, 해군(해병포함) 약 40만 500척 약 2,000대로서 주력은 제7함대로서 형성되어 있다.

공군은 약 17만 약 3,000대로서 육군의 주력은 현재 베트남에서 전투중에 있다.

하와이에 태평양군사령부를 두고 에코 사이판 한국 일본 오키나와 대만 비도 태국등의 기지 및 시설로서 유사시에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군은 62만 약 30개사단, 대만 자유중국군은 53만 약 24개사단 태국은 14만 명의 유력한 병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미, 한중, 각々 군사원조능력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육군 13개사단, 해군 12만톤, 공군 약 1,100대 계 25만명으로서 일미안보조약에 의하여 유사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군의 핵병기는 오키나와에 있는 구식 IRBM마-스B와 제7함대 소속의 포라리스잠수탑재의 IRBM의 B52 폭격기탑재 핵폭탄 등이 극동의 핵전력으로 되어 있으며 미본국의 ICBM(대륙간)이 상시 잠재적위력으로서 핵산으로서의 보호위력을 갖추고 있다.

다. 미국의 입장과 일본의 책임

이상은 제4차방의 기본적 전망과 대외적 정세의 개요이며 판단이다. 그렇다면 일본 자체의 대내적체질은 어떠한 것인가, 일본은 안보조약에 의하여 미국과 동맹관계를 체결하고 군사적으로

「핵산」에 의하며, 경제적으로 「\$산」하에 드러가 미국과 깊은 관계하에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현재에 있어 일본은 미국의 유력한 경쟁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폐쇄체제의 일본경제는 개방체제로 이행되고 무역, 자본의 자유화와 그 고도성장은 GNP (국민총생산) 1,400억 \$로서 자유권에 있어 미국 다음가는 제 2위로 약진하고 대국에의 길을 맥진하고 있다. 외화준비고도 30억 \$ (1969.7) 로 최고 구주제국과 견주코 円은 마르크 다음으로 강한 통화로 되었다. 경제대국 일본은 대미종속에서 자립으로 변화된 지위로 향상되었으나 미국의 입장으로 볼때 일본은 일방적인 안보체제상에 있어 성장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베트남에서 고루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은 무엇을 하였는가? 사또, 녀슨 회담의 문제점도 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대국으로서 국제적책임을 분담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방위분담책임문제는 미국내에 있어 급속히 거론되고 강화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과 견지하에 일본은 일본을 주체적으로 여하히 형성할 것인가. 대국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서 여하한 공헌을 해야 할 것인가, 금시에 이러한 와중에 일본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여하히 추진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1970년대의 일본에게 과해진 큰 명제라 할 수 있다. 일본이 현안보체제하에 있어 경제적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다극화의 세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질서를 조성할 열의와 새로운 국제정세하에 일본이 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어느정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

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 방위의 규모

방위노력에 있어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 있어 다음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 (1) 국방비의 절대액
- (2) 국방비의 신장율
- (3) 국민총생산 (GNP) 에 대한 비율
- (4) 국가예산에 대한 비율
- (5) 국민 1인당에게 분담되는 국방비 등이다.

국방비에 있어 일본의 절대액은 1968년도 4,200억円이며 세계에서 14번이다. 미, 소, 중공, 불, 영, 서독, 이, 화, 동독, 가, 책코, 인, 호주, 일본의 순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68배, 소련은 34배, 불, 영, 서독은 일본의 5배 내지 4배이다. 국방비의 증가율은 1963년~1968년의 5개년간에 미국 8.7%, 불 8.5%, 이 5.2%, 서독 2.1%, 영국 1.2%이며 일본은 11.3%로서 상당한 속도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 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영전략연구소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미 9.8%, 소 9.6%, 중공 9.2%, 불 5.3%, 영 5.7% 서독 4.3%, 이 2.9%, 일본은 0.9%로서 57개국중 최하위에 있다. 이것은 비 1.7%, 분 1.6%, 오 1.3%, 룩셈부르크 1.2%에 다음을 차지한다.

국방비의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비율도 구주각국은 대체로 25% 전후인데 비하여 일본은 6.7%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비는 원래 그나라의 내외정세와 그 대응책으로서 결정되는 것이다. 아랍연합과 이스라엘, 남북베트남 등 현재 전쟁상태하에 있는 국가들은 현저하게 높은 비율이며 미국의 국방비는 그 40%가 베트남전비인 것이다. 해외파병의 의무를 수행하는 나라, 또한 핵무장을 국책으로 하는 나라들의 국방비도 따라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일본은 헌법상 해외파병은 없다. 핵무장은 안한다. 외국을 공격할 무기는 안갖는다 라고 하는 「전수방어」의 전략방침이며 국민생산의 성장율이 타국보다 높으기 때문에 국민생산에 대한 비율은 적다고 한다 하더라도, 57개국중 제일 하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액과 증가율의 견지에서 일본은 세계에 있어서 커다란 방위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장성의 주장은 일본내에서는 자위적 발언으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각국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 이유나 변명이 통할리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이제 일본은 정부에서 획정하는 「경제사회발전계획」에 있어 「방위계획」을 명확히 설정할 시점에 온것이다.

「제4차방위력정비계획」은 사람의 눈을 속여 그늘에서 육성시키겠다는 「사생아」적 존재나 취급을 버리고 좀더 당당하게 대국다운 실력상응한 방위규모를 갖추어야 할것이다. 불란서나 영국이 통화위기에 처하여 국방비삭감으로 불렀던 정세와 현재 일본의 입장은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일본은 자주방위의 기치하에 천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일본은 실력불상응의 「대국의식」에 사로잡혀 국방비를 성역화하여 개직된 재정으로서 옛날의 전철을 되푸리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마. 제 4 차방위력정비계획의 기본

이상의 정세를 감안하여 제 4 차방위계획의 전망, 특히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에 대하여 기술해 나가겠다.

제 4 차방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 3 차방위에 계속되는 것이며 5개년 간을 목표로 장기적 전망에서서 일본의 방위력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 4 차방위를 알기 위하여 우선 제 3 차방위의 대강만을 설명한다.

(1) 계획의 방침

(가) 통상병기(채레식)에 의한 국지전 이하의 전략사태에 대처한다.

(나) 육·해·공자위대의 내용 충실, 강화를 도모한다.

(다) 자위대의 사기를 강양시키고 정예부대를 건설한다.

(2) 계획의 실시

(가) 육상 방위력의 향상 기동력의 향상, 방공능력의 강화

대·중형 헬리콥터 83대를 확보, 장갑차, 수송차 약 160

량, 수송기 10대의 정비, 전차 280대 갱신, 편성정원을

18만명으로 하고 육상자위관 8,500명 증가

(나) 해상방위력의 강화

주변해역의 방위능력의 강화, 해상교통안전확보,

함정 56척(4만8천톤)의 건조, 호위함 14척, 잠수함

5척 기타 37척 항공기의 정비, 대잠기 60대, 대잠해

리콥타 32대

(다) 방공력의 강화

호-크, 나이키 각々 2내편성 각1대의 편성준비

호-크, 나이키의 국산화 경제관계능력의 향상 및 근대화

신전투기(FX)의 선정·정비의 착수

(라) 기 타

교육훈련, 구호체제의 충실, 기술연구개발체제의 강화

훈련용, 구난용 항공기 55대 정비, 훈련지원함등 4척(5,000

톤)의 정비, 초음속고속연습기(TX)의 국내개발, 각종유도

탄의 연구개발

소요경비 2조3,400억円, 1조1,250억원.

이상의 계획양식은 미국방성의 맥나마라 방식과 유사한 것이며
용병방식에 있어서 육·해·공 각 자위대별로 구별은 안했지만 예
산의 할당은 종래의 각 자위대예의 쟁취하는 형식이다.

방위비의 달성율은 1967년에서 1969년까지의 3년간에 54% 동

1967년에서 출발한 도로계획은 50%, 하수계획은 46%의 달성
율에 불과하다. 이것은 방위청에서, 장기계획의 범위내에서 착실
하게 계획을 실행한 결과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전전의 임시군
사비특별회계적인 군사비라고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개(1969.12) 방위청장관이 10월에 통박, 육해공마료감부, 기
본에 대하여 표명한 제4차방계획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국제정세하에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확보하는데 있어 현
재의 방위력은 충분치 못하다. 한편 일본의 경제발전은 현저하며
국제지위의 향상도 뚜렷하다. 또한 오키나와의 반환도 가차왔다.

이런 상황하에 일본의 국력, 국정등으로 볼때 금후에 있어서도 미
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고 방위력이 부족한 개소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 자신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주
적방위노력을 경주하고 자국의 방위는 제1의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것을 본지로 하고 통상병기에 의한 국지전이하의 침략사태에 대하여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가능한한 신속히 달성해야
한다.

또한 장관은 원안작성에 있어 다음의 제점을 배려할 것을 지시했
다.

(1) 해상에 있어서의 방위력강화, 충실

- (2) 요격기능의 종합적 충실과 방공능력의 향상
- (3) 착상육침공에 대한 대응능력향상의 배려
- (4) 각종장비의 갱신, 충실, 근대화, 기술연구개발과 장비의 국산화추진
- (5) 요원확보에 유의
- (6) 오키나와에 관하여 그 지리적 특성에 감하여 기능력의 독립성 부여를 중시

이상과 같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육해공 각막료감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국제정세 특히 극동정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병력양을 획정하고 예산편성에 착수했다.

바. 제 4차방의 예산

그러나 여기에 있어 제 4차방의 전체예산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편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선술한 바와 같이 절대액과 국민총산에 대한 비율을 타국과 비교하여 산출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내외정세 특히 극동군사정세를 판단하여 일본의 국가정책에 대응한 방위정책이 수립되고 작전구상에 기초하여 산출해야 된다. 물론 일본의 경제성장불가고 인건비의 증가율을 가산해야 할것이다. 종래의 2차방, 3차방을 감안하여 제 4차방의 예산들은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

선술한바와 같이 일본의 국방비는 GNP의 0.9%로서 세계 57개국

최하위에 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미국국민과 38도 선을 전후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60만대 군으로 배치하고 있는 한국국민에게 있어서는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좌익진영의 무방비중립론이나 군비점감등의 논쟁은 기술한바와 같이 큰 모략으로서 국민의 복지와 평화를 미끼로 국가를 팔아먹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면에서 회심의 미소를 품고 있는 것은 공산국가진영일 것이다. 오히려 최근의 군비필요론쪽이 국가존재론으로서는 명확한 것이다. 세계인사들이 자주방위의 강화를 제창하게 된것이 눈에 띈다.

1969년 4월 일경연총회에 있어 5월의 경단연총회에서 각국 자주국방의 강화를 결의했다. 일본병기공업회도 5월 총회에서 방위산업의 강화 무기수출의 실현방침을 제시하고 GNP의 4%의 방위예산으로서 세눈을 이르켰다. 정부나 여당은 각국 국방비의 세눈을 연구하는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 대국에 적합한 방위노력 군비의 의미, 국내민생안정관계, 자주방위, 냉전하의 평화유지, 대국적사명감, 여하한 정도의 병력양을, 기술개발은 등々 제반문제를 착실히 연구해 나가야 할것이다.

아. 자주방위와 소요경비

1970년의 막은 열렸다. 이 70년대는 방위강화의 10년이며 자주방위의 강화의 중추는 일미안보체제의 새로운 구상과 방향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년의 사또, 낙순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실튼 좋튼 일본의 자국방위는 물론 아시아, 극동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객관적 정세하에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미영의 방위선후퇴에 따른 극동주변의 강한 불안에 대한 보답으로서도 일본은 아시아방위와 아시아 경제원

조의 증대를 위한 정세는 점차 조장되어 나가고 있다. 작년 12월 총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정부 자민당은 자주방위논을 기초로하여 국민의 안전보장시를 일익강고하게 되고 70년대의 새로운 안전보장체제를 수립하는 초기의 세력을 확보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은 종래 헌법과 국민감정을 무기로 하여 방위노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왔으나 현금의 낙슨미대통령의 아시아전략의 재검토라는 시기에 접하여 조성된 세계정세에 있어 70년대의 일본방위를 구상하고 정기신략의 전망하에 제 4차방, 제 5차방의 장기계획에 의하여 아시아 제국의 경계심을 완화시키면서 자주국방의 실현을 기해야 한다. 자주방위논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의 해석이 있다.

- (1) 자국을 자기가 수호한다는 정신논의 강조
- (2) 자주적으로 방위정책을 결정한다.
- (3) 헌법범위내에서 핵이외의 방위능력을 증강 완비한다.
- (4) 핵을 포함한 제방위력을 갖고 자력방위의 체제를 확립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을 개정한다.

이상과 같은 자주방위논은 구체적으로 방위계획을 작성할 시에 있어 「구체적위협은 무엇인가 구체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군사력을 가져야하는가,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국력으로 어디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의 방위기술논까지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방위비의 국민생산의 대비만으로서 그나라의 방위노력을 사정해서는 안된다. 그나라의 내외정세와 판단에 의해서 그나라의 방위방침을 결정하고 군사력을 어느정도 가질것인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또한 일본의 정치체제는 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자본주의경제를 전제로한다. 현재에 와서는 사회주의체제의 판료성에서 오는 비생산성에 따라 사회주의체제우위의 신화는 붕괴되어 나가고 있다. 1970년대는 미국의 핵산하에서 평시핵무장은 하지않고 해외파병은 하지않은 전제로서 구상되어 수립되어있으나 80년대에 일본은 미, 소, 중공, 구주연합과 같은 내국의 논리에 입각하여 핵보유분제는 현실적인 푸로세스로서 등장될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자. 기본적 방위구상

제 4 차방의 기본적구상은 작년 10월 유전장관의 4차방 책정에 관한 지시에 의거한 것이며 제 4 차방은 1972년도 발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기본적인 방위청의 생각은 「미국과 안보조약의 체제를 견지하고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력에 상응한 통상병기에 의한 국지전이하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극동전략으로서 지상병력과 이에 수반하는 항공병력은 점차 후퇴할 것이 예상되며 전략적인 핵산 즉 ICBM 및 B52에 의한 핵 전략폭격기의 엄호와 미제 7함대의 태평양지역의 광범위한 방위력은 제 4 차방에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상병기만의 자주방위를 일본이 담당하게 된다. 종래에 있어 일본이 1-2개월간의 전수방위에 의하여 미군 지상군의 태원을 기대하는 구상은 미군의 극동전략의 후퇴로 말미암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주방위와 유관하여 일본으로서도 중대한 결의를 촉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교적 소외되고 있으나 방위청은 병력증강의 기본적 고려사항으로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영해외 및 적항공기지에의 자주적 진공은 미공군, 미해군에 의존하는 것이 제 1이지만 일본으로서도 금후의 과제로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고려할 문제사항인 것이다.

차. 육상자위대

◎ 적진공의 상정 (가정)

육상자위대는 제3차방에서 6,000 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13개사단 18만명 체제로 되었다. 9,000 명사단~7, 7,000 명사단~6이다. 1개사단이 1만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세계 강국중 일본뿐이다. 협소한 국토에서 경제한 지휘운용을 생각했겠으나 가상적국 1개사단에 대하여 2~3개사단으로 당면하지 않으면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금후의 분계로서 사단정원을 1만명 이상으로하여 편제도 연대에서 증대가 아니라 중간의 대대편제를 채용하여 병력의 충실과 장비의 근대화 기동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원 18만명은 구육군에서는 일로전쟁전의 병력수준이지만 구육군사단 (전시편성 2만명) 에 비하여 8,000 명 사단이지만 화력비 약 2배 1평방m당 화력밀도 약 3배 1차량당 인원 약 5명으로서 진력은 근대화되고 증대되었다. 그러나 병력량으로서는 외부의 무력공격 또는 간접침략 치안출동에 대응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외부의 무력공격을 가상할 시에 대일작전을 위한 적의 수송력 사용병력 진공방면등의 연구가 과제로 된다. 방법으로는 상륙 또는 공정으로 한 진공이 있다.

소련군극동 병력배치상으로 고려할적에 일본에서 가차운 북해도진공작전의 경우 소유선박 선정 수송기 (공정사단) 의 보유량으로 보아 화태 천도방면에서 제1차상륙,착륙의 병력은 약 3개사단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구주, 산음방면 진공작전 병력은 조선방면에서 보유 선박 소형주정 등을 가지고 소련군 1개사단 중공, 북괴군 1개사단, 공정 1개사단을 충용가능하다고 볼때 제1차진공병력은 최대한 약 3개사단으로 추산된다. 그 다음의 2차 3차의 진공과 보급문제는 상략한다.

소련, 중공, 북괴의 대일진공병력은 10개사단에서 20개사단으로 예상될 수 있다. 이것은 최초의 발진병력이며 일본이 필착병력은 아니다.

미해공군 및 일본해상 공중의 공격격멸작전에 의한 손실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본측의 손실도 산출해야 할것이다. 상, 착륙방면에 대해서는 적은 필히 제해제방권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공과 소련의 대립이 일본측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금물이며 방심해서는 안된다.

이상의 상정으로 볼때 일본의 사단정원이 적사단의 2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때 현재 정원수의 사단이라면 30개사단 내지 40개사단의 보유가 필요하게 된다.

적의 상, 착륙병력을 2-3개연대로 과소평가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적국으로서 의미가 없으며 원수복 투하의 일본점령이라면 몰라도 가능성이 허박하다.

일본방위달성의 요결은 적선박을 해상에서 적수송기를 공중에서 우선 격멸할 수 있는 병력을 갖는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육상자위대가 적상륙선정을 해상에 격멸하는 유도탄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병력의 능률적사용을 위한 기동력을 지상, 공중 다같이 증강할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상정은 군사지식은 핵시대에 있어 구군사사상적 설상이라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현실적 소설적공상론은 핵시대를 전제로 하면 누구든지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전술의 용병기술을 떠나서는 적당한 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다.

④ 치안출동, 폭력혁명에 대응

쏘련과 중공은 현재 끊임없이 일본을 향하여 행해지는 평시 공세는 사상적침투와 간접침략이다 재작년 이래 북위를 떨치는 폭력학생집단은 중공로선인~사회당로선의 공산계학생들이며 조용한 운동에 의한 침공작전을 계속하고 있는것이 쏘련로선인~공산당로선의 공산계학생들이다.

일반적으로 경찰력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시에 또는 군, 도, 부, 연지사가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여 부속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치안출동이 있게 되고 이 치안출동의 훈련이 수년전에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을때 방위청장관은 애매한 답변을 하였으나 이제는 당당히 훈련을 하고 있으며 전군까지 참가한 연습사항을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 현재의 육상막료장이 경찰출신이며 내국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이 행한 것은 믿음직스러운 일이다. 소수의 병력으로 북도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장비와 훈련이외에는 없다.

또한 직접 일본을 적어 침공할 경우 이와 병행해서 행하여지는 전범으로서 폭력혁명이 있다. 일본 공산당원 사회당좌파, 동조자들은 작년래의 총선거시의 투표수로서 판단할적에 300만명 내지 50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전쟁이나 동란발발시에 봉기한다. 무기는 단순한 화합병등이 아니고 잠수함에서 혹은 공중투하에 의한 단총 소총 단기관총 폭약등 또는 일부무력잡임 일본인해방군의 사용등에 의한 무장봉기를 생각할 수 있다. 군사기지 시설 연료 병기 탄약고의 습격폭과 철도통신망 전원 수원의 파괴 군수공장 방송국 신문사의 점거 또는 파괴등의 내란과 자위대일부의 반란 경찰의 내부붕괴적화등은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것을 상정하고 평가하여 평가하여 냉정히 고찰할때 2대채상 육상자위대 18만명이 병력량은 적절 하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동대진재시에 소수인의 폭동과 인심안정 치안유지복구를 위하여 약 8만명의 병력을 동경주변에 집결한 일이 있다. 구육군은 3배동원에서 태평양전쟁직전에는 5배동원의 병기 탄약 피복식량 자재의 비축과 인적준비가 없었으나 현재의 자위대는 소수의 예비자위관이 있을뿐이며 증탐전력은 전부와 같다. 18만명의 전력전개로서 과연 방위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특히 적지상군은 단기결전을 도전할적에 이는 형식 전개의 전력증강을 재고하게 되는 것이다.

월맹의 저항과 탐구전은 전쟁지도자와 병사들의 의지는 물론 그 후방에 중공과 소련의 존재가치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이저서는

안된다.

천재야 재해에 있어 인명 및 재산보호의 필요에 따른 재해과건이 있으나 이는 자위대 본래의 임무는 아니며 전쟁억제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일본방위가 주임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사회당과 공명당이 자위대를 해산하고 건설부대등으로 개편하겠다는 인기정책을 채용하고 있으나 한번 정권을 잡고 쓰런 중공류의 정책을 답습한다고 한다면 역으로 군비증강과 징병제도의 채용을 별수없이 취하게 될 것이다.

◎ 편 제

전술한 바와 같이 사단정원의 증가에 의하여 사단고유의 전력증강이 필요하며 최소한 일만명사단으로 해야 한다. 모집이 곤란한 실정이나 이는 단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사단의 종류를 지역방위부대와 기동결전부대로 구별 전자는 현지 정원사단이래도 좋고 또는 불란서와 같이 각현에 1개연대를 배치하여 민방위조직과 긴밀히 체계화시키고 장비는 경장비로서 국내방위 치안 및 공정작륙의 적에 대처하고 후자는 결전사단으로서 기동력이 풍부한 중장비로 한다. 이러한 것을 제4차방위력정비기간에 준비하고 제5차방위편제로서 완료한다.

제4차방의 기간에 전차사단 3개를 개편한다. 사단수는 4차방 5차방을 통하여 15~20개사단정도로 증강하고 오끼나와에 4차방미기에 1개사단을 상주시킨다.

◎ 장 비

(1) 지상기동력 (무기 전차 차량)

소수병력을 유효하게 결전장에 접결시켜 전승을 획득하기 위하여 기동력이 풍부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61식전차의 대량 (약 천대) 장비와 61식개량전차 (약 100 대) 정찰전차 신장갑차 (약 500 대) 155 mm 자주류탄포 107 mm 자주 박격포 (각 50 ~ 100 량) 106 mm 자주무반동포 (대전차포) 자주다연장로켓트 (300 대) 자주부교전차 화수차, 고속견인차, L~90 견인대공기관포 (100) 기타 일반차량 (0.5 톤 ~ 6 톤) 을 대량 수송작전을 위하여 2만 5,000 대 건설기재 1,000 대 정도의 보충이 예상된다.

국내도로의 장비는 기동력발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공중기동력의 증강 공군 (항공자위대) 자체의 고속화 미사일화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지상작전에서 유리시켜 육군고유의 항공과 공군과의 간격을 크게 했으며 이로 인하여 직접 피해는 육군이였다 육상작전주행을 위하여 공중기동과 저공근접 항공지원과 지상부대가 필요로 하는 항공정찰은 당연 육상항공이 스스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육상자위대의 근대화를 위하여 육상항공의 발전과 확충을 스스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된다. 헬리콥터의 증강 H-X의 개발은 제4차방간의 중요한 문제다.

OH~6, HU/B V-107 OH-47 구겐. 헬리콥터는 지상에서의 집차, 트럭 트래이다.

지상지원으로 L-R 연락정찰기 A-R 지상직협기 (공격기) H-X

의 지상작전협력 무인정찰기등 총계 약 500기를 4차방위 기간내에 국산장비한다.

수송기 C-46의 대체기로서 개발할 C-X는 공막이 개발하여 육상자위대의 수송에 협력시키고 공정부대도 C-X (약 50대)의 생산시설에 의한다.

(3) 적수송선단공격미사일등의 장비

일본방위달성의 제1요결은 적수송선박을 양상에서 격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것은 기술한바다. 제2차대전중의 본토결전도 이러한 사상에 입각했으며 적수송선단에 대한 특공기 특공주정 로켓트를 준비하고 철저한 공격을 기도했다. 이것은 대륙상방위의 상식이다.

육상자위대로서는 양상을 항행중인 수송선단을 격침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과 육상용주정의 발진선에 정박중인 선단을 공격하는 중거리미사일을 제4차방기간에 개발하고 제5차방에 이것을 장비할 수 있겠끔 검토해야한다. 전자는 사정 200K~100K 정도가 소망되고 후자는 사정 50K 정도가 적당하다. 어느것도 현측에 명중은 기술상 곤란하다. 탄두에 소형어뢰나 특종폭약의 장비도 생각할 수 있으나 특히 100K 이상위 미사일의 탄두에는 유사시 특종한것을 장비할 수 있게 개발할건이 된다.

기타 SAM 호크대대를 5개대대로 증가 대전차 ATM 30형로켓트 다연장 SSR의 증편 단거리 SAM의 개발이 행해진다

(4) 통신전자장비

지상전술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에레크로닉스, 웨폰, 씨스팀의 장비체제를 증강하고 육상병기 지상통신조직의 근대화를 도모한다. 지휘장비, 전술장비, 전술용RADA의 채용, 미사일용전자장비등의 장비현대화가 제4차방을 계기로 증강된다.

카. 해상자위대

◎ 해상방위의 의의

일본의 국지전쟁 발생의 공산은 다음 세가지를 가상할 수 있다

(1) 일본에의 직접침공

(2) 해상봉쇄

(3) 한정된 핵전쟁 또는 핵무기에 의한 위협

(1) 의 직접침공은 기술한바 있으나 적선단의 상륙침공에 대하여서는 우선 항공병력과 해상병력으로 친입저지를 감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해상자위대는 스스로 연안방비의 책임을 갖는다. 미제 7함대만 의존하는 것은 넓은 해역역에 있어서는 지난하다.

(2) 는 대잠 대기퇴전 해상방공으로 금후의 일본자활상 중대한 임무로 된다.

(3) 에 대하여는 미군의 억지력에 기대하나 해상자위대로서는 해상에 있어서의 적핵전략에 대하여 대잠 대대 병력등을 보유하고 혹은 1980년대에 가서 일본자체가 핵억지력보유를 결의할 시기나

성세가 도래할 것이다. 이상의 3항중 (2)의 해상교통의 파괴는 일본운명의 사활을 제하는 중대문제이다. 제2차대전중 미국 잠수함에 의한 해상보급로의 단절로 작전용병뿐만 아니라 국력 전쟁수행능력의 조성, 9,000만인구의 생활확보를 위한 고난이 패전의 승패한 근본요인이었다. 또한 역으로 독일잠수함이 크게 연합국을 곤란하게 한 전술을 보더라도 해상교통선확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2차대전중 일본이 남방 및 대륙의 중요자원과 또한 석유자원의 선박수송은 미잠수함에 의하여 선정이 점차 손실소모되고 작전수송과 총동원물자수송선박의 균형을 잃어 물자동원계획은 항상 변경되고 패전직전직전에는 그계획조차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전쟁경제파탄을 초래하고 전쟁간을 통하여 고뇌의 연속이 있었다.

제2차대전중 통사부에 국력조성의 군정부 및 정부는 전쟁간 그문쟁을 계속하면서 전쟁수행에 임하였던 역사가 있다. 해군군사명부는 당초 해양결전사상에 철하여 해상호함대의 편성은 종전에 임박하여 겨우 명력을 할당하는 결의를 할 정도였다. 제2차대전개전전에 500만톤이었던 일본상선은 잠수함에 의하여 115척, 485만톤이 격침되고 전시중 조선산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선에 노력했으나 패전시 잔전보유선박은 150만총톤이었다.

당시 미국군작성부장겸 전미국함대총지휘관이었던 킹대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만약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해군에 의한 봉쇄효과에 따라 기름, 쌀 그외중요물자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본은 항복할수 밖에 없을 정도로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지에서 방위청 장관이 제 4 차방에서 해상방위대의 병력증강
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것이다.

◎ 선단호위

극동지구에 배치되어 있는 소련잠수함은 200 척 이상으로서 일본
에 대한 위협은 치명적이다. 특히 원자잠수함은 10수척에 달하고
있다. 잠수함의 수중속도는 제 2 차대전을 배가하고 15~20 노트로
되고. 잠항중의 이목장치도 격단으로 진보되었으며 공격병기인 어뢰
도 그능력이 향상되고 수천 미터에서 적함선을 포착공격가능케 되었
다.

특히 원자력잠수함은 수중속도 25~35 노트로서 전물잠항 2~3 개
월의 연속항해가 되고 수천 K에 달하는 핵탄두의 탄도탄을 장비하
고 있다. 고유차원이 적은 일본은 1억의 인구를 보양하고 일본
산업을 유지하며 조선시국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에 의한
해외물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70 년대에는 2 억톤여의 해외물자를 내외의 선박에 의하여 수입
하게 된다. 그물자의 해외의존도는 쌀 8.2%, 소맥 64%, 염
70%, 양모 100%, 면화 100%, 철광석 86%, 석탄 11%, 동
60%, 석유 98% 부탄 100%로서 액체연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것은 전쟁능력으로서 큰 약점을 형성하고 있다. 수
입을 위한 소요선박은 일본선박과 외국선박이 각각 반반으로서 유
사시에 있어 일본선박(약 1,800 만톤) 만을 의존한다면 단순한 산

솔로 계산한다면 수입량은 연간 반분의 약 1억톤이다. 이 수입에필요한 선박을 3차방말기에 보유하는 해상자위대함정 약 17만톤과 500대의 항공기로서 여하히 선단호위에 입할 수 있단 말인가 적잠수함이 광막한 해역으로 출동하기 전에 잠수함기지의 격파 기지의 봉쇄 적항단출입의 감시 적항만의 폭격등 적극적 작전이 있으나 일본의 국정과 헌법은 이를 허용치 않는다. 미해군 제7함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적잠수함이 넓은 해역으로 출동할 경우 일본수송선단을 호위하는 함대에 의한 반격작전의 방식 즉 한터.키러(탐색.격파)작전을 취하게 된다.

일본해상자위대가 태평양 전지역을 분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해군과 책임을 분담하여 어느지점 또는 지역을 해양호위한다는 책임분담이 있게 된다. 호위선단방식이란 태평양의 어느지역에 집결된 수송선단의 주변을 함대로 방위하고 일본항만까지 호송하고 또한 그선단을 어느 지역까지 호위송원 하는것을 말한다. 과연 함정 17만톤의 병력으로서 어느 해역까지를 호위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사이판도 괌도에서 일본항만까지로 할적에 미국방면 및 동남아시아 방면에서 그지점까지의 해역의 호위와 해로의 안전은 미해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어 마락카해협까지 일본함대로 호위하는 것은 현병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유병력량으로 사이판도에서 수송선단을 호위할 경우에 가상적 적국의 잠수함을 가지고서 한다면 반년에 300만톤의 선박을 소모당할 것이다.

일본의 조선능력을 계산하고 이에 응하는 국력의 감모 즉 식량
장재, 석유, 병기, 항공기, 함정의 생산감소와 국민의 식생활을 계산
하고 「경제봉쇄시 일본의 전쟁수행능력한계」의 검토를 하여 해상
자위대는 소요 병력량 (혹은 필요최소한) 을 용감하게 요구해야 할 것
이다. 적어도 17 만톤이라고 하는 일청전쟁 (1892 년) 전의 병력
량을 가지고 서는 기개월간으로 보유선박이 손모하고 국력은 기개월
로서 어느정도 감모될 것인가의 수자를 경제기획원등과 합동작업을
하여 위정자에게 보고 답신해 두어야 한다.

식자들중에는 해상봉쇄전에 전쟁은 에스카레-손을 이르게 전면핵
전쟁으로 되고 단시일에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와 반
대로 핵전력의 균형은 오히려 핵전쟁발발의 공산은 적고 통상병기
에 의한 전쟁의 장기화 해상교통과괴전에 에스카레-트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된다. 현재 이스라엘과 아랍연합의 대전이 2년반유여
가 되어도 그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중소로
말할것 같으면 수년 간에 균하여 국경전투는 년 1,000 회에 달하는
실정에 있다. 소련의 ICBM의 수가 점차 미국보유수에 비등하고
모스크주변은 ABM (대유도탄씨스템) 가 완비되고 우주선을 썩을리
고 수복의 발사대로서 핵병기의 우위를 갖고 있으면서 핵병기의
선행사용을 피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장기해상교통과괴전으로나
올수 있다고 하는것도 판단되는 것이다.

◎ 광역해상 방위와 건함계획

이상의 견지에서 4차방에 있어 해상방위력의 정비는 ① 주변해역의 방위능력의 강화 ②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중점적으로 행한다. 즉 본토주변해역의 대잠, 대수상방비와 외항선단 호위대잠수색소탕을 위한 병력증강이다.

4차방의 건함계획으로서 4차방미의 보유량을 25만톤 정도로 조성스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것은 연간 2만톤에서 2만5천톤의 계속건함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4차방기간에 90척 32,000톤의 퇴역함선을 내다보고, 약 13-15만톤의 신조선계획이다. 이는 3차방에 비하여 2배이상의 계획인 것이다.

함정보유량 25만톤은 극히 불충분한 병력량으로 판단되므로 차후의 5차방, 6차방으로 15년계획에 의해서 소요의 건함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호위함정 (DDH, DDG, CLGH 등) 잠수함 (SSB, SSM) 방비함정 (PCH, PTH) 기뢰정 (MSC, MMC) 특무함정 (공작함, 양륙지천함, 고속급유함) 으로서 총래 3차방까지는 적자수주를 감수했으나 금후 적정단가를 보증하고 척수증가에 의한 적자누적을 되풀이하지 않는 조달방식 발주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신형함건조에 있어서는 운용과 기술면에서 근대화를 진전시켜 고출력의 지젤 탑재 미사일, ASW용 탑재 헬리콥터-에레크토로 너스, 씨스템등을 채용하여 장비체제의 개선을 도모하며 DDG, CLG등의 탑재 SAM 다-타-의 성능향상과 대함미사일 개발에 의한 함재장비근대화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 대잠항공기

4차방의 항공기장비는 3차방과 동일하게 대잠작전이 중점이다. 특히 오키나와 반환후에 있어 광역해상방위에 적응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PS-1 대잠비행정 P2-V 대잠초계기는 각각 50~60기를 정비하고 PX-1 대잠초계기의 시작개발, 합제용을 포함 HBS-2 대잠해라콥타 60~70기 이하 V-107 해라콥타 (구난소해) 30기 YS-11 수송기 C-1 수송기의 장비가 계획된다.

타. 항공자위대

제4차방은 제3차방에 계속되어 중요지역의 방공능력을 강화하고 (오사카, 나고야 주변의 미사일에 의한 도시방공등) 특히 F-105의 국산 (104대 결정)에 따라 요격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TX (초음속고등연습기)는 일본최초의 국산젯트전투기로서 기대가 크다.

항공기의 고속화에 따라 정보의 획득, 전달, 판단, 지령의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대적관제조직이 채용되고 관제지휘능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자동화된 방공시스템은 제4차방에 있어서는 그사용에 있어 원숙한 영역에 도달한다. 또한 유사시 적기지에 진입 공격은 평시에 연구해 두는것이 중요하다. 금후 항공자위대는 SAM와 유인기와의 효율적인 조직과 육해작전지원장비 초계 정찰 (AEW기) 수송 구난장비, 고속화된 (베-타-위치) 통신장비

자동화된 통신방식 전자전장비 (ECM, ECCM, 전자정찰기능) 등이 일층 근대화된다.

AAM으로서 스파로- , 팔콘 ASM 국산 AAM의 채용등에 의한 공격(요격) 능력은 일층 향상된다.

과. 핵장비, 유사시 핵무장의 검토 (서안)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1980년대에는 미소 중국 구주연합과 같이 대국과 어깨를 견주어 핵보유문제가, 실현적으로 제기된다. 「사도수상」이 말한 「핵은 만들지 않는다 안 갖는다. 드러오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영원한 논리가 아니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수반하여 일본은 좋은 싫든 대국의 논리로서 핵보유의 현실과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본의 기술, 국력으로 말하면 현시점에 있어서도 일본만 결의한다면 국산장비라는 것은 가능하며 외국에서는 「핵크럽」 가입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제 4 차방을 통하여 민간도 방위청도 이 연구 및 검토는 요망되며 그러한 사태는 또한 잠재전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상은 위험하다고 보는 경향도 있으나 그 사용의 결의는 첫째는 정부, 정치에 달려있는 것이며 위정자의 적절한 판단이 항상 보지될 것이 요망된다.

구체적 계획등은 생략하나 70년대의 자주방위로선의 행방은 일본의 장차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로 될 것이다.

◎ 유사시 핵무장 (시안)

민사당은 유사시 주류론으로서 미군기지를 없앤다는 안보문제로서 국민에게 평소하고 있다. 즉 기지없는 안보를 말하며 이것은 용병기술상 곤란한 의론이다. 유사시 항공기등에 의하여 급거수송된 발가벗은 병단은 기지에 집적된 병기 탄약 연료가 있음으로만이 유력한 전력으로 될 수 있는 사실을 망각한 의론인 것이다. 나아가서 이 의론은 유사핵무장은 넌센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용병기술상 그것이 가능하고 이발상은 중요한 전쟁억제력으로 되는 안가한 방위론인 것이다. 현재 항공방위대의 주력전투기인 F 104 탑재기기는 발간기관총 AAM 미사일 외 각종폭탄을 익하에 장비하고 내지폭격을 행할 수 있다. 미국은 이외에 원폭도 장비하여 특종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종기에는 특별포탄장치가 되어있다. F-4 전투기도 동일하다. 이런것을 1만미터 상공에서 투하하든가 저공침입으로 시한신관방식으로 상승반전하고 급속히 퇴피하여 폭발후의 피해를 피할것이다. 유사시에 있어 정부나 최고지휘관인 총리가 사용을 결심할 경우 핵폭탄을 비축한 지점 대만 한국 람도 오키나와 등으로 비행하여 장비하든가 일본기지로 수송하여 장비하는 방법등이 있다. 이것이 극히 단순하게 보이지만 사전훈련과 정부간의 협조등의 곤란성은 있으나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 그자체가 잠재전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에 배치된 SAM 나 이키 J(국산)는 물론 탄두에 핵을 사용할 수 없게 통상 TNT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이외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내구주 한국의 나이키하큐리스는 물론 핵탄두와 양용의 장치로서 적기의 집단래습에는 당연히 이핵탄을 사용한다. 이것은 발사대등에 특별한 배선이 있으나 일본것은 물론 이것을 제거하고 있다. 남성의 수정관을 묶고 있는 것과 같다. 유사시 푸르든가 재배선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전술한 장거리 수송선박 공격미사일탄두도 유사시 탄두에 핵을 사용할 수 있겠음 미군의 SSM의 탄두와 호환성이 되는 미사일로 하면 된다고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잠재전력이라 볼 수있다. 이상은 여론상 우선 방어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공격용 MRBM(중거리유도탄) 등은 벌써 항공위성용로켓트가 생산 되던 이러한 성능향상에 의하여 핵탄두는 미국것을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된다. 요는 유도기술과 설비에 문제가 있을뿐이다. 불란서의 ICBM의 프로세스는 평화이용로켓트의 군용 전용으로서 미국은 이와 반대로 군용을 달로켓트용으로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다. 군용이든 민용이든 따지고보면 동일한 것이다. 극단으로 말하면 민간사용의 항공기도 훈련을 실시하고 혹은 비상한 결의만 찾는다면 핵폭탄을 적상공에 운반 투하할 수 있는 것이다.

6. 결 론

군사에 산의 결정을 위해서는 2개의 사고과정이 있다*. 첫째는 나라의 경제력·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어느정도 희생하느냐 하는 것과 둘째는 군사력의 증강을 위하여 타의 경제 부분이나 국민생활을 어느정도 희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면의 국제정세와 전략 방위목표를 어느정도 생각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70년대의 장기전망과 국제정세로서 판단한 방위구상에 기초하여 자주방위의 정비계획에서 불매 제 4차방의 방위예산은 현재 방위청에서 시산하고 있는 5조수천억원(일화)을 상회할 것이다. 이는 국민총생산의 1년간 성장율을 12% 정도로 추산하고 4차방기간 국민총생산의 5개년간합계 500수십조원(일화)의 1~1.2%로 계상한 것이다.

3차방기간은 국민총생산합계 약 300조원으로 하여 방위비는 5개년간 2조 3,400 억원으로서 0.9%의 비율이다. 타국과 비교할적에 극히 적은 비율임은 말할것도 없다.

종래 방위예산은 년년 국민총생산 혹은 국민소득의 몇% 국가예산의 몇%라는 규모를 전제로 하여 그규모내에서 방위력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방위력을 적정하게 판단하고 그 정비계획에 입각하여 방위예산을 할당해야 할 것이다.

제 4차방에 있어서는 이것을 시산하여 요구함은 예산기술상 곤란하므로 15년 계획정도의 장기에 걸쳐 점차 수요방위력에 알맞게 금 예산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국방담당 방위청관료나 중앙막료감부의 막료와 국가예산담당의 대장 경제기획청관료와의 의견충돌은 군사예산의 규모결정에 있어 영구적으로 피할 수 없다. 그것은 방위문제는 1면 경제문제이며 국력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4차방 5개년 간의 예산 10조원 (GNP 2%) 이 집단방위의 1전력으로서 전쟁억제의 최대효과를 가져오고 혹은 유사시방위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경제적 방위력이며 맥나마나의 이론과 같이 유효한 발휘라 볼 수 있다.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평시의 방위력 증강과 이에 수반되는 산업기술의 기여와 그기술의 잠재적 전력으로서의 효과등을 평가해야 한다. 항공기공업의 기술이 1반산업의 품질관리를 보급시키고 신뢰성관리수법이 전기제산기의 생산발전에 공여하고 F104 기체부분품의 폭발성형기술이 판금가공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대형프레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계미칼, 미닝그방법은 복잡한 부품가공에 효과를 나타내어 코스트저감에 기여하고 제트엔진용 베어링기술은 동해도 신한선의 베어링을 단시일에 완성시키고 군사용로켓트의 개발기술은 평화이용의 로켓트개발에 역할을 하며 미국에서는 월면까지 사람을 가게 하는등 군사상 요구하는 고도의 기술은 평화이용에 크게 역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일본의 혁명정당은 일본방위는 미제의 독점자본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방위력은 자본가를 바쁘러 증대시키고 국민의 세금은 그를 위하여 파내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의 무방위가

어느나라의 침략을 유발시키고 그러한 나라는 가장 강대한 군비를 갖고 막대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혁명정당은 음쇄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력이 강대하게 정비된다 하더라도 훈련정도한 정예군대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오합지중이며 유사시에 써먹을수 없는 무용물로 화한다. 이제 일본자위대는 헌법의 뒷걸을 백진하여 그늘에 있다고 하지만 정강한 군대로서 성장되고 있는 것이다. 금후 기본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고 당당한 군내로서 자위대원은 상시 군복착용을 자랑으로 하겠금 되어야 한다.

금후 일본은 21세기를 향하여 경제대국으로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일본은 년년 번영하고 복지국가로서 풍부한 생활을 향유하게 될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평화와 독립국가로서의 자랑과 긍지속에서 수립될 것이며 일본의 전통을 계승하고 자주국방의 평이한 논리를 유지하는 힘을 가점으로서만이 획득되는 것이다.

방위력의 가장 효과적인 용법 즉 경제사용에 대해서는 금후 일반의 심각한 연구가 요망된다.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and activities. It emphasizes that proper record-keeping is essential fo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particularly in financial matters. This section also touches upon the legal implications of failing to maintain such records, which can lead to severe consequences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like.

2.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delves into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record-keeping, including the types of documents that must be retained and the duration for which they should be kept. It provides a detailed overview of the various categories of records, such as financial statements, contracts, and correspondence, and outlines the best practices for organizing and storing these documents to ensure they are easily accessible and secure.

3.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addresse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record-keeping,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digital information. It discusses the risks of data loss, corruption, and unauthorized access, and offers strategies to mitigate these risks. This includes the use of secure storage solutions, regular backups, and access controls to protect sensitive information.

4. The fourth part of the document provides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governing record-keeping. It covers th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hat apply to different types of records and industries, and explains how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se requirements. This section is particularly useful for organizations that operate in regulated sectors, where strict adherence to record-keeping standards is often mandated.

5. The fifth and final part of the document offers practical advice and tips for implementing an effective record-keeping system. I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lear policies and procedures, training staff on proper record-keeping practices, and regularly reviewing and updating the system to reflect changes in requirements and technology. The document concludes by emphasizing that a well-maintained record-keeping system is not only a legal requirement but also a valuable tool for managing an organization's operations and protecting its interests.

1970 년 일본방위백서 (요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970년 일본방위백서 (요약)

◎ 현대사회의 방위

제1부: 현대사에 있어서의 방위의 의의

[1. 새로운 일본의 진로]

[2. 평화의 허구와 세계의 현실]

[3. 안전보장을 위한 인류의 노력]

① 국련의 이상과 현실

② 집단안전보장체제와 중립 및 비동맹

③ 군사기술의 진보와 방위노력

이상 생략

[4. 나라를 지키는 마음]

우리나라의 방위란 국토의 안태와 민족의 문화 자유와 민주주의 및 국민공동의 생활체와 번영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1민족, 1국가, 1언어 1억인구의 개성을 갖는 나라는 따로 없다. 이러한 국가의 특색도 독립과 평화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개성의 획득 유지가 얼마나 많은 피와 노력을 요한다고 하는것은 역사가 말하는 것이며 금일의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들 국민은 부정확, 침략에서 공동생활체와 국토를 지키기 위해 나라가 이리서서 최선의 저항을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국민 1인 1인의 의무이며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자각의 방위 의욕인 것이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며 애국심의 발로인 것이다.

참된 애국심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만 으로서는 안된다. 국가의 위급에 제하여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었다는 열의가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방위의 방향

제 2 부 : 일본방위의 방향

[1 . 극동에 있어서의 군사정세와 예상되는 무력분쟁]

① 국제긴장에 대하여 말하면 미소의 강대한 핵전력을 중심으로한 상호 억제관계하에서는 여하한 나라도 대규모의 무력행사에 의한 현상변경을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정세이며 전면전쟁 또는 전면전쟁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전쟁은 강력히 억제되어 있으나 소위 민족해방투쟁과 국가이익의, 대립군에 의한 국지적인 무력분쟁은 여전히 끊이없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한반도와 인도지나 그리고 대만해협을 끼고 3개의 분열국가가 있으며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존재하고 있다. 중공 및 북한은 계속 경직한 대외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아시아에서 핵병기를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공의 동향과 영군의 아시아에서의 철퇴와 소련해군의 진출, 베트남문제처리의 귀추등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금후 분쟁발생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② 예상되는 무력분쟁

핵시대에 있어 전쟁 내지 무력분쟁은 제한전쟁의 형태로서 발발하고 있다. 직접 침략이란 공연한 무력침략이 억지된 결과 간접침략이란 잠행적 침략의 형태로 행하여질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족해방투쟁지원을 가장한 침략과 같이 간접침략이 주체가 되고 직접적인 무력행사는 간접침략의 보조적 또는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채용되는 등 그목적 지역 수단 기간등이 한정되는 사태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국경을 넘어 직접침략의 가능성이 전연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특히 이런 경우에도 제2차세계대전과 같이 대규모적인 것은 억지되고 국지적인 제한전쟁의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 애국심 교양등기반에

[2. 국방의 기본]

우리나라 국방의 기본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헌법과 그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국방에 관한 제법령 및 제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의한 평화국가 문화국가이며 복지국가의 건설을 큰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방정책은 이 목표내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헌법과 일본방위

우리나라 헌법은 「국권의 발동으로 전쟁과 부력에 의한 위사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

한다」로 정해져 있으나 외부에서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를 위하여 이것을 배제하기 위한 행동으로서의 무력행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타국에서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저지하는 것은 방위 그 자체이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소와 3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의 사천판결에서 무력공격에 대한 항하기 위한 자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정했다.

② 국가시책내에 있어서의 방위

국가안전보장상 우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여하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위협과 침략을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노력이다. 적극평화외교, 국제연합의 강화 구축과 군비관리도 이와 관련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가안전보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교시책과 동시에 경제력의 증진 사회보장의 추진 교육의 향상 애국심의 고양 등 국내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방위에 관한 군민적 합의가 방위의 기본이며 이 합의가 무너지면 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금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는 군사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군사면에 있어서의 노력이 평시 전시를 불문하고 중요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

③ 국방의 기본방침

정부는 소화32년 국방의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국방목적을 명백히 하였다.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국방의 목적은 직접 및 간접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침략이 행해질적에는 이를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국권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간의 협조를 도모하며 세계 평화의 실현을 기한다.

(나) 민생을 안정시키고 애국심을 고양시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다) 국력과 국정에 응하여 자위를 행한 필요한 한도에 있어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라) 외부에서의 침략에 대해서는 「장차 국권이 유효하게 이를 저지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때까지는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기초로 하여 이에 대처한다」 이어 정부는 재차 비핵3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사항을 헌법하에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보장으로서 군사에 대한 정치의 우선 즉 문민통제가 특히 중요시 된다.

[3 . 일본의 방위력]

① 자주방위에 일 . 미안전보장체제

우리나라는 제1차적으로는 자력으로 침략에 대처하는 것을 근본방침으로 하며 전수방위를 유효하게 성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가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노력을 계속한다. 그러나 핵시대인 급일에 있어 여하한 나라도 자력만 가지고서 방위를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것이며 많은 나라가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에 의한 외부침략에 대처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방위력과 일 . 미안전체제에 기초한 미국의 군사력과 같이 일본방위의 만전을 기한다는 체제이다. 우리들은 핵병기와 공격적 병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일본의 안전보장상 국제정세에 큰 변동이 없는한 일미안전보장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 해외파병은 하지 않는다.

집단안전보장체제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자주방위는 필히 단독방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성을 확보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상호제휴한다면 집단안전보장체제도 자주국방의 일형태인 것이다. 공동방위에 있어 주의할 것도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타력본원적 의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기대나 의존은 국민의 국방에 대한 무책임한 감정을 심어주고 국민정신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상대방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일본방위 및 상호협력에

의한 안보체계의 약화를 초래할 걱정도 있는것이다. 스스로의 나라는 스스로 수호한다는 자주방위태세의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적 합의속에 실효있는 상호협력의 길을 개척해나갈 필요가 있다.

② 방위력의 건설 = 략

③ 방위력의 정비

정부는 경찰예비대의 창설이래 주차적 방위력의 정비에 노력하고 소화 33년도이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3회의 방위력정비계획을 책정했다. 그결과 자위대는 질량 공히 상당히 진전했으나 47년도부터의 신 방위력정비계획으로 전수방위태세를 더하여 1보전진시킬 필요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

④ 전수방위의 방위력

우리나라의 방위는 전수방위를 본지로 한다. 전수방위의 방위력은 우리나라에 침략이 있을 경우에 국가고유의 권리인 자위권의 발동으로서 전략수세에 철하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방위력의 크기 그리고 여하한 병기로 장비할 것인가 하는 방위력의 질 침략에 대처할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행동의 양상등 모든 것이 자위를 위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 우리나라는 제한전쟁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상병기에 의한 방위력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 핵병기는 물론 전술 핵병기라 하더라도 그 사용에 대한 국제적 반응에의 고려와 제 2차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적인 전쟁으로 발전할 우려가 없다 라고

할 수 없는 이유로서 그사용은 억제되고 있다.

⑤ 방위력의 한계

(가) 헌법상의 한계

(a) 우리나라의 방위력은 자위를 행한것이기 때문에 그규모는 자위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자위력을 의미하는 가는 그때의 제반정세 과학기술의 발달등의 제조조건에 따라 한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여타 다른 타국에 대한 침략적위협을 주는것 예를드러 B52와 같은 장거리폭격기 공격형항공모함 1CBM등을 보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b) 또한 우리나라의 방위력은 자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위의 범위를 넘어서 행동할 수는 없다. 즉 자위대가 출동을 명받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침략에 제한적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해외파병은 행하지 않는다.

△ 정책으로서 핵장비를 하지 않는다.

(가) 정책상의 한계

(a) 핵병기에 대해서는 비3원칙을 갖는다. 소형핵병기가 자위를 위하여 필요최소한도의 실력내의 것으로서 타국에 침략적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한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는 설사 헌법상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책으로서 핵장비를 하지 않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b) 우리나라의 방위력은 국력과 국정에 응하여 자위를 위한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회보장 교육 기타의 제정책과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조화를 가지면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따라서 방위력정비를 위하여 국가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경제력의 증대에 비례하여 국민총생산과 국가예산과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침략의 억지와 배제

우리나라의 군사전략의 기본은 우선 직접 또는 간접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스스로 유효한 전수방위의 방위력을 보지하는 동시에 핵병기를 사용하는 전쟁과 대규모적인 무력분쟁의 위협에 대하여서는 일미안전보장체계에 의한 미군의 억지력에 기대한다.

이상 침략의 미연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략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간접침략에 대하여서는 조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태의 확대를 방지하고 이어 장기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직접침략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방위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우리나라 및 주변해역과 공역에 있어서의 항공우세 제해권확보에 노력하며 그 사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국한시키겠끔 도모하며 침략을 조기에 배제한다.

각국의 국방비

국명	국방비 (1970년도) 억원	국민1인당 국방비 (1969년도) 원	국방비의 국민총생산 에 대한 비율(%)
미국	267,840	141,480	8.6
소련	143,201	59,040	8.3
서독	22,000	33,480	3.5
일본	21,146	44,280	4.4
영국	20,563	36,000	5.1
중국	17,568	2,342	6.1
이탈리아	8,698	15,840	2.9
프랑스	7,992	22,320	5.0
서독	7,164	41,760	5.9
가나	6,268	36,000	2.5
멕시코	5,886	39,240	5.6
일본	5,693	4,680	0.8
인도	5,281	1,080	3.5
아랍공화국	4,579	9,080	13.3
호주	4,572	37,080	4.0
서독	4,064	49,680	4.0
화란	3,870	28,800	3.7
이스라엘	3,870	144,000	25.1
자유중국	1,735	11,160	9.2
서독	1,519	23,760	2.2
한국	1,199	3,600	4.0

주 1. 개략 1970 년도의 국방비규모

주2, 이표는 영국 전략연구소의 미리씨 리, 바란스에 의한 것임

(1970 - 1971)

3.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 1969년도 실적에 의한

4. 중공 국방비는 4,808,000,000 \$

인구 7억5천에 대한 계산임

5. 자유중국의 국방비는 1968년도 실적임

6. 호주 국방비는 1969년도 것임

[4. 일미안전보장체제]

① 일미안보체제의 추이

② 일미안보조약에 기초한 일본방위

③ 시설 및 구역의 제공

이상 생략

◎ 자위대의 문제점

[1. 자위대의 현상]

① 자위대의 임무

② 자위대의 조직

③ 방위비관계

④ 평시에 있어서의 자위대 활동

이상 생략

[2 . 자위대의 특색]

① 문민통제

명치헌법에서는 통사권 독립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 군의 작전 용병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그이외의 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내각과 의회의 통제가 미치지 않은 범위가 넓게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군사가 정치 및 외교에 우선하고 국방문제를 군사전략중심으로 추구하고 정치 외교에 관여하여 이를 리-드 하였다는데에 문제가 있었다. 금일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군사에 대한 정치우선의 원칙의 확립과 이를 올바르게 운영하는데 있다.

② 시민으로서의 자위관

이상 생략

[3 . 방위시설과 기본대책]

(a) 방위시설의 현상

(b) 기지대책

이상 생략

[4 . 경제발전과 자위대]

(a) 자위관 모집

(b) 생활환경의 개선

(c) 산업사회와 자위대

이상 생략

[5 . 세론과 방위]

- ① 세론조사에서 볼수있는 방위사상
- ② 국민과 방위
- ③ 부인과 방위

이상 생략

④ 국제세론과 방위

최근 우리나라의 자주방위노력에 대하여 제외국중에는 우리나라에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품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전후 우리나라는 평화국가임을 국시로 하여 방위에 관하여는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지하고 전수방위에 철한 엄한 제약을 스스로 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판은 지나친 기우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군사대국으로서 군사적 수단에 의한 국제정치상의 역할을 수행할 국가는 아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평화이며 이를 위하여 국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평화를 항구적인 것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신장되는 경제력을 세계민생안정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고 이를 채용하고 각국이 기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국제여론도 새로운 일본의 진로를 오인하는 일없이 정확하게 평가하게 될것이다.

